IV.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5. 군비의 확충

IV. 군사조직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1) 10위제와 특수부대

조선조는 개국한 지 9일만에 문무관제를 정하여 반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서반은 동반과 별도로 武散階를 설정하여 구분하는 동시에 중앙군제는 10위 로 구성 발표하였다.1)

여기서 발표된 10위는 義興親軍左衛・右衛・鷹揚衛・金吾衛・左右衛・神虎衛・興威衛・備巡衛・千牛衛・監門衛 등으로 각 위는 중・좌・우・전・후의 5領으로 편성되었다. 이같은 건국 초기의 10위제도는 의흥친군좌・우위를 제외하고는 고려 말 거의 그 기능이 마비되었던 중앙의 2군 6위(8위)를 그대로 준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10위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각 위에 5령씩 합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50령, 약 5만 명으로 편제되었다. 이 위에는 고려시대의 유제인 上將軍・大將軍・都護八衛將軍・將軍・中郎將・別將・散員・尉・正 등 상급 지휘관과 하급 지휘관에 의하여 지휘 통솔된다고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10위제도는 장교 이상을 관료체제의 정돈과 연결시켜 재편성할 방향을 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즉 고려 말 중앙군은 무관의 관료체제와 군사조직의 실제가 동떨어져 있던 형편에서 갑자기 정비된 중앙군사조직이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正 이상의 무신에 대하여는 그 편성과 존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영이 실제로 군사를 균등하게 편성하였

^{1)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앙군사력은 李成桂의 친위 부대인 의흥친군위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건국 초기의 10위는 그 형태만을 남기고 있던 고려 말 이후의 8위에 이성계 중심의 의흥친군위를 합속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말한 문무백관제도를 반포하였을 때 인사행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종친·훈신 등의 힘있는 자들이 의흥친군좌·우위의 都 節制使·節制使·同知節制使 등을 집중적으로 겸대하고 있는 반면, 8위에 대 하여는 다만 한사람이 判八衛事을 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각 위가 다 같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같이 판팔위사 한 사람으로 8 위를 담당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로 보아 비록 건국 초기에 10위 제도라 고는 하나 사실상의 군사력은 의흥친군위에 있었고 그 외의 8위는 고려제도 를 답습하였을 뿐 실속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에는 정비되지 않은 각종 특수부대가 존치되어 있었던 것이다.2)

중앙군의 실세였던 의흥친군위는 고려 말 창왕 즉위년(1388) 8월 이성계가 中外諸軍事를 도총하게 했던 都摠中外諸軍事府를 그가 즉위하면서 파하고 그 이름을 의흥친군위로 바꾼 것이다.3) 따라서 의흥친군위는 이성계의 휘하 병사인 함경도 출신의 토착적 사병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그가 왕위에 나아가면서 중앙군의 실세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 친군위는 주로 궁성을 시위하고 왕의 행차에 배종했으며 왜구가 있을 때는 그들 가운데서 장수를 징모하여 일부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기도 한 핵심적 군사력이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10위와 더불어 중앙군으로서 고려 말부터 반법제적으로 두어진 成衆愛馬가 있다.4) 성중애마의 정확한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고려 중기에 초기의 병제가 무너지면서 변칙적인 특수부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충렬왕 때에는 衣冠子弟를 불러 왕을 숙위토록하고 그들을 忽赤라 하였다. 그 중 왕의 측근기관인 內侍·茶房 등 近侍의 임무를 띤 자들로 군사기능을

²⁾ 閔賢九.《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研究院, 1983).

^{3)《}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유. 千寛字、〈朝鮮初期 五衛의 形成〉(《歷史學報》17・18, 1962;《近世朝鮮史研究》, 1979).

⁴⁾ 金昌洙, 〈成衆愛馬考〉(《東國史學》10, 1966).

강화하였는데 성중애마는 순수한 직업적 전투부대는 아니었으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일익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 건국 초에도 그대로 유지된 성중애마는 忠勇四衛·近侍四衛를 비롯하여 司楯·司衣·司彛·司饔 등의 여러 계열이 궁중 대소사를 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왕궁의 중요한 군사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같은 성중애마는 새로운 군사제도가 확립되어 궁성 호위제도가 자리잡히기까지 그대로 존치되었으니 태종 이전까지 성중애마가 차지하는 군사적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의흥친군위와 더불어 중앙에서 군사력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侍衛牌가 있었다. 의흥친군위가 조선 초기의 중앙군의 핵을 이루고 있었으나 고려말부터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장수들의 사병격인 시위패였던 것이다. 물론 고려 말부터 이들 장수 중심의 군사체제를 지양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마는 정치적인 면에서 왕권 중심의 권력 집중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領兵체제는 거의 그대로 조선왕조로 넘어와 이성계는 즉위와 더불어 "종친과 대신에게 각 도의 병을 分領하도록 한다"5)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重臣들은 각 도의 절제사를 겸하고 직접 각 주군에 공문을 보내서 軍丁을 가려내어 서울에 올라오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양인 농민인 軍士로서 그들 상번병을 시위패라 했으며 이들이 중앙에서 주요한 군사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건국 초기의 중앙군의 실태는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10위와 사실상 중앙군사력을 이루고 있는 왕실 사병으로서의 의흥친군위 그리고 중신들의 사병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위패 및 반법제적인존재였던 宮中府衛 병력인 성중애마가 존치되어 있어 중앙군을 국가적 체제아래 재편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6)

왕실과 중신들의 사병적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앙군에 대한 국가적 통제체제로의 전환은 건국 초기부터 시도되었다. 즉 태조 2년(1393) 9월

^{5) 《}太祖實錄》 권 12, 태조 6년 7월 정사.

⁶⁾ 閔賢九, 앞의 책, 106쪽.

고려 말부터 설치되어 있던 三軍摠制府의 義與三軍府로의 개편은 군사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치가 확고해져 갔음을 알게 한다.7 그러나 설치 초기의 의흥삼군부는 의흥친군위의 군사력을 인계받고 중·좌·우군 절제사에 모두이성계의 近族인 왕자·군을 임명하여 의흥친군위 자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다.8)

의흥삼군부가 각 군의 절제사를 갖는 체제에서 판사라는 단일책임자를 갖는 관서의 성격을 취하고 여기에 판사로 鄭道傳이 임명되면서 군사관계의 총본부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도전은 《朝鮮經國典》에서 의흥삼군부는 군사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0위는 물론 각 지방에서 번상하여 온 시위패도 의흥삼군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도전은 진법훈련 등도 삼군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군사에 관한 감독권과 지휘권을 의흥삼군부로 귀일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일차적인 시도가 10위제의 명칭 변경이었다. 즉 태조 3 년(1394) 2월 判義與三軍府事 정도전은 다음과 같이 그 명칭을 변경하여 十 司로 하고 3군에 분속시켰다.9)

義興	親軍	左衛	$-\!$	義興侍衛司)
義興	親軍	右衛		忠佐侍衛司	中軍
鷹	揚	衛	\longrightarrow	雄武侍衛司	中 車
金	吾	衛	\longrightarrow	神武侍衛司)
左	右	衛	\longrightarrow	龍驤巡衛司)
神	虎	衛	\longrightarrow	龍騎巡衛司	左 軍
興	威	衛		龍武巡衛司	,
備	巡	監	\longrightarrow	虎賁巡衛司)
千	牛	衛	\longrightarrow	虎翼巡衛司	右 軍
監	門	衛		虎勇巡衛司	,

위의 개혁안에서 보듯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옛 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4시위사·6순위사의 구분과 각 사를 3군에 예

^{7) 《}太祖實錄》 권 4. 태조 2년 9월 병진.

^{8) 《}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10월 기축. 당시 의흥삼군부의 節制使를 보면 中軍 永安君 芳果, 左軍 無安君 芳蕃, 右軍 與安君 李淸 등이 겸하고 있다.

^{9) 《}太祖實錄》 권 6, 태조 3년 2월 기해.

속시킨으로써 10위를 강화 개편하여 수도경비와 궁섯시위의 중심볏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지휘계통인 삼군부에 10사를 분속한 조치 는 비로소 실병력과 지휘관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10)

뿐만 아니라 당시 정도전의 개혁안은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외 에도 시위패의 정원과 통솔관계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도전은 의홍삼 군부의 통제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여러 중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사적 시 위패에 대한 영속관계를 제약하기 위하여 진법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결 과적으로 이방원의 쿠데타에 의하여 숙청됨으로써 중앙군제의 정비는 다음 정종대로 넘어갔다.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정도전이 계획한 병권의 중앙 집중화는 왕 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를 계기로 왕권 중심의 중앙군 사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왕자의 난으로 방원의 정치세력이 확립되고 그가 세자로 봉해지면서 권력의 방향이 잡히게 되자 새로운 안정을 지향하 는 노력과 함께 사병혁파론이 제기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정종 2 년(1400) 4월 사헌부 겸대사헌 權近. 門下府左散騎 金若采 등의 상소에 의하 여 왕 및 세자전의 시위를 제외한 일체의 私門直宿을 불허하고「家不藏兵」 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11)

사병혁파가 공식화되자 절제사가 거느린 군마는 모두 집으로 돌려 보내어 삼군부에 속하게 하고 서울에 머물고 있는 절제사를 혁파하였다. 뿐만 아니 라 절제사가 거느린 사적 시위패도 모두 혁파하게 되자 조선왕조의 정치적 안정과 집권화를 위한 중앙군의 대정비가 시급히 요구되었다.12) 사병을 혁 파하고 중앙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처가 甲士의 복립이었다.13) 이

¹⁰⁾ 千寬宇, 앞의 글(1962), 66쪽.

^{11) 《}定宗實錄》권 4, 정종 2년 4월. 이전에도 정종원년 11월에 사헌부에 의하여 이미 사병혁파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때에 와서 정종과 세자에 의하여 사병 혁파를 공식화하였다.

^{12) 《}定宗實錄》 권 5, 정종 2년 9월.

^{13) 《}定宗實錄》 권 6, 정종 2년 12월. 車文燮、《朝鮮時代 軍制研究》(檀國大出版部, 1973).

갑사는 중앙군의 기간요원으로 10사의 각사에 분속시키고, 10사는 수도 일반 치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상수단에 의하여 왕위에 나아간 태종은 別侍衛・內禁衛・內侍衛 등의 친위적인 성격의 특수 병종을 잇따라 설치하여 왕권강화・권력집중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친위병인 감사의 수도 늘려 갔다.

이와 같이 사병을 혁파한 뒤 10사의 지휘관으로는 공신과 부마등을 임명하여 왕권을 강화시켰다. 즉 태종 9년(1409) 10월에 개편된 9侍衛司·1巡衛司체제에서 보여주듯이 순위보다는 시위임무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그러나 10사의 시위체제로의 전환은 고려시대 巡軍萬戶府를 잇는 都府外라는 경찰병력의 義勇巡禁司가 있어 10사 가운데 유일하게 순위를 담당했던 忠武巡禁司와 더불어 순작·감순을 담당했기 때문이다.15)

10사제도는 태종 18년(1418) 세자에게 양위하는 당일에 개편되었다. 즉 10 사에 龍奮司와 虎牙司의 2사를 증설하여 3군에 4사씩 분속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는 상왕으로 퇴위한 태종이 이후에도 병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왕과 상왕 중심의 중앙군체제로 변개되면서 2사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군의 병권이 두 왕에게 분할됨으로써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태종이 죽은 세종 5년(1423) 12월에는 흉년을 이유로 증설된 2개사를 폐지하고다시 10사제도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폐지된 2개사는 세종 25년(1445)에 다시 증설되어 12개사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중앙군의 기간병인 감사의 수가 6,000명에서 4,500명으로 감소된 것을 메우기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2사제도는 문종 원년(1451)에 다시 5사로 정비된다.¹⁶⁾ 문종은 12사 60령의 지휘관인 護軍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하여 12사를 의흥·충좌·충무·용양·호분의 5사로 개편하고 나머지는 혁파하되 그 병력은 모두 5사에 분속

^{14) 《}太宗實錄》 권 14, 태종 7년 12월 정해 · 권 18,태종 9년 10월 을축.

¹⁵⁾ 韓祐劤、〈麗末鮮初 巡軍研究〉(《震壇學報》22, 1961).《太宗實錄》 권 18. 태종 9년 10월 음축.

^{16) 《}文宗實錄》권 7, 문종 원년 5월 갑오. 문중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陣法》을 편찬하는 등 군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五司制度로의 개편도 그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다.

하도록 하였다. 다시 5사는 의흥·충좌·충무사는 중군으로, 용양사는 좌군으로, 호분사는 우군으로 하여 각각 3군에 분속되었다. 그리고 5사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甲士·別侍衛·銃筒衛·防牌·攝六十 등의 여러 특수병 종을 분속시켜 5사 25령으로 하되 2개사가 입직하면 3개사가 출직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5사제도로의 전환은 전투편성을 전제로 한 5군(중·좌·우·전·후 군) 편제와 진법을 전제로 한 5陣法과 직결되는 편제로 세조 때에 마무리되 는 5위제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17)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1) 육수군

건국 초기의 지방의 陸守軍 역시 고려의 유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즉고려 말에는 각 도마다 전담하는 도절제사가 있어 경기좌·우도·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해도·교주도·강릉도의 8도 군사행정 및 전투수행을 위한 군사구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방지역은 8도와는 달리 軍翼체제를 이루고 있었다.18) 그러나 도절제사나 혹은 부절제사는 대개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로 모든 지방의 군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절제사가 거느리고 있던 기간요원들이었다. 즉 지방의 육수군은 兵馬(團鍊)使·知兵馬使・兵馬(團鍊)副使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고 있었다.19)

이러한 체제는 태조 6년(1397) 5월에 가서 군사단위로서의 도가 폐지되고 각도에 2곳 내지 4곳의 진을 두어 도절제사 대신 첨절제사를 두고 부근 군현와 병마를 통괄하는 동시에 도순찰사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²⁰⁾ 그러다가이듬해 10월 다시 도절제사가 복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종이 즉

¹⁷⁾ 陸士 韓國軍事研究室、《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3》(陸軍本部, 1968).

^{18) 《}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5월 경오. 閔賢九, 앞의 책, 181~183쪽.

^{19) 《}太祖實錄》 권 1, 태조 3년 3월 을사.

^{20) 《}太祖實錄》 권 11, 태조 6년 2월 갑오.

위한 지 2개월 되던 때로 도절제사의 제도가 국초에는 거의 없던 내용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도절제사영이 두어져 營軍이 설치되는 것도 이 때부터라 생각된다. 개국 당시 일반 행정구역과 같은 뜻을 갖던 도절제사제도는 태종 9년(1409) 10월 11개도로 정비되었으나 이후 조선조의 지방 행정구획이 8도제로 정비되면서 兵馬道도 8개도로 정비되어 갔다. 이러한 조직은 세조 초에 지방군제가 정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8도 중 경기도에는 평시에 도절제사가 없었고 풍해도와 강원도에는 처음 파견되었으나 뒤에는 관찰사 겸임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또 경상ㆍ평안ㆍ함길도 등에 는 2명의 도절제사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 전담 도절제사가 파견되는 도에는병영과 감영의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런 경우 그 지방의 수령은도절제사가 정하기도 하며 서서히 병마도의 지위를 굳혀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도의 영과 연결되는 진의 설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태조 6년에 병마도가 한때 폐지됨으로써 그 도에서 요새가 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첨절제사를 두어 지키게 했다. 이는 특히 남방지역의 방어기지로서 구실을 하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두어진 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의 설치는 국방군으로서의 지방군이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어 조선조 지방군인 鎭軍의 성립을 가져왔다. 그 뒤 도절제사 道가 다시 복설된 뒤에 도 각 도마다 군의 소재지가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世宗實錄地理志》에는 17개소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도절제사가 파견되는 도(營)와 첨절제사가 파견되는 진으로 정비되는 동시에 이를 유지하는 군사력을 營鎭軍이라 하였다.²¹⁾ 지방군으

²¹⁾ 閔賢九, 앞의 책, 181~187쪽.

로서의 영진군은 주로 馬兵으로서 지방 영진에 부방하는 군대였다. 당사 양 민이 지는 의무병역은 대개 陸守・騎船軍으로 나눌 수 있다. 육수군의 테두 리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로는 번상숙위하는 시위패 · 영진군 그리고 수성군 등이 있다. 영진군과 수성군은 독자적인 지방의 육수군을 이루고 있었다. 그 러나 영진군이 마병으로 편제된 반면 수성군은 주로 보병으로 편제되어 있 었고 그 대우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영진군ㆍ수성군 이외에도 陵 등을 수호하는 守護軍과. 해안 요새지에 설치 된 영진군의 결함을 메우면서 내륙지방을 수호하기 위한 雜色軍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잡색군은 鄕吏·官奴·無役百姓 및 公私賤口를 망라한 것이었다.22)

시초에 잡다하게 설치되었던 병종은 세조때에 이르러 正兵으로 일원화 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2) 수군(기선군)

水軍은 초기에는 騎船軍 혹은 船軍으로 일컬어져 고려 말 조선 초의 왜구 격퇴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건국 초에는 중요한 항구마다 處置錢・節制使 등을 두었고 세종 2년(1420)에는 수군도절제사를 폐지하여 병마절제사가 겸 한 일이 있으나 이듬해 이후 다시 그 중요성에 따라 도안무처치사ㆍ첨절제 사 및 처치사 등을 두었다. 이들 밑에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都萬戶,萬戶 등은 배치하여 수군을 지휘하였는데 이들의 지휘를 받는 수군을 기선군이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군도절제사 등이 최고지휘관이라고는 하지마는 실재 로 관찰사의 간여 범위가 넓어서 초기에는 경하는 겸우가 적었으나 세종 12 년(1430) 水軍節度使로 변개된 이후에는 관찰사나 병마절도사가 겸하는 경우 가 많았다. 기선군·선군 등으로 불리는 수군은 태종의 사병혁파와 갑사 등 의 복립 등으로 시위패의 상경숙위가 사실상 중요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일 부가 수군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그 수가 불어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수 군(기선군)의 正軍 수가 약 5만에 이르고 있다.

수군인 기선군의 증가는 신분적 제한이 가해짐으로써 정비되어 갔다. 기선

^{22) 《}世宗實錄》권 93, 세종 23년 6월 신미.

군은 여말 선초에는 대개 연해민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자로 충당하고 그들이 지는 역이 苦役이라 하여 어·염의 이권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국가정치가 안정되면서 권력지배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특전이었던 어·염의 이권은 소금을 구어 바쳐야 하는 고된 역으로 변하여 오히려 부담으로 바뀌었다. 기선군에 종사하는 것을 점차 천시하게 되고 역을 피하려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연히 신분적으로는 身良役賤의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선군에는 세력이 없고 가난한 연해민이 속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奉足이 배당되었으나 지방군이 대체로 4번 교체인데 반하여 양번 교체로불리한 것이었다. 전국의 기선군이 대체로 같은 조건 아래 있었지만 경기지방과 같이 수도에 가깝다는 이유로 喬桐·江華 등은 長番 교체로 하여 수군정비 이후의 기선군의 전형적 존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수군체제는 《경국대전》에 규정하여 정비되었다.

(3) 익 군

동·서북면의 지방군 조직은 고려 이래의「翼軍」조직으로 대표된다. 익군 조직은 고려 초기의 州鎭軍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고려 말 공민왕 7 년(1353)에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적 기능이 강한 지역 단 위별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국경지대를 요새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다.²³⁾

그래서 西京軍民萬戶府・安州軍民萬戶府 등을 설치하고 상만호・부만호 등을 임명하였다. 그 후 紅巾賊의 침입과 대명관계의 성립 등으로 원과 대립하여 장차 東寧府의 정벌을 단행하려던 공민왕 18년(1369) 11월 서북면이 서경 만호부의 좌익・우익・전군・후군・정예・충성・신첨・신성 등의 10군을 비롯하여 각 국경지대의 요지에 역군을 두고 상만호・만호를 두었다. 따라서 익군 조직은 일정한 지역에 軍翼을 두고 이것을 합쳐 하나의 군사단위로 삼은 데서 비롯하였다.

서북면에서도 이 익군 조직이 조선조 건국초기에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태조 원년(1392) 9월 당시의 익군 조직을 보면 평양의 10억, 안주의 10억, 의주

^{23) 《}高麗史》 권 44, 世家 44, 공민왕 7년 6월 계미.

의 4익 등 24개의 규모였다.24) 그러나 당시 서북면은 전반적인 인구를 파악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행정력이 약했으며 동북면은 강역조차도 확실하게 구 분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래서 태조 6년(1397) 12월에는 정도전을 東 北面都官撫巡察使로 파견하여 순무하게 하였다. 이 때에 永興道・吉州道가 정해지고 지방 행정단위가 마련되어 관원이 배치되는 동시에 각 관별로 익 군 조직이 이루어졌다.25)

이와 같이 익군체제가 동ㆍ서북면에서 정비된 것은 태조 6년 이후이었다. 따라서 남방의 여러 도가 시위패 이외에 영진군을 갖게 될 무렵에는 이 지 역에서는 시위패와 익군이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북방지역에서의 익군은 남 방의 영진군과 같이 영진별로 분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는 달리 각 익 에 소속되어 군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익군 조직은 동ㆍ서북면을 막론하고 보다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바뀌어졌다. 즉 서북면과 동북면의 모든 지역을 軍翼道에 분속시키는 조치가 처해진 것이다. 서북면인 평안도는 세종 6년(1425) 6월 각 익의 소속 군현을 재조정하여 평양・안주・의주・삭주・강계의 6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인근 모든 지역을 이 군익도에 분속시켰다.26) 또한 동북면은 이듬해 2월에 함흥ㆍ영흥ㆍ길주ㆍ경워의 4개 군익도로 나누고 각 도를 중ㆍ좌ㆍ우의 3익 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국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27) 평안도는 5도 20익. 함 경도는 4도 12익으로 편제되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평안도의 안주도 대신 寧邊道로 개편되어 있다.

이러한 익의 책임자는 모두 행정책임자가 각 군익의 군사직까지 겸하였기 때문에 행정책임자의 계급에 따라 병마절제사(2품)ㆍ병마단련사(3품)ㆍ병마단 련부사(4품)·병마단련판관(5·6품)이라 했는데 가령 평안도 의주목사는 義州 道中翼兵馬節制使를 적하는 따위이다.

이와 같은 북방에서의 군익도 설치는 전통적 국방지대인 이 지방에 각 도 별로 병마도절제사가 있기는 하지만 전지역을 몇 개의 군사지대로 다시 나

^{24) 《}太祖實錄》권 2. 태조 원년 9월 기해.

^{25) 《}太祖實錄》 권 12, 태조 6년 12월 경자 · 권 13, 태조 7년 2월 경진.

^{26) 《}世宗實錄》 권 24. 세종 6년 6월 병진.

^{27) 《}世宗實錄》 권 27, 세종 7년 2월 경신.

누고 이들 각 군익도는 구체적 군사행동상의 단위를 이루어 사태에 대처하 도록 한 것이다.

또 주력인 역군은 남방의 영진군과 비슷하지만 영진군이 番次에 따라 징발되었을 때 각 진에 가서 복무하였지만, 전자는 거주지가 곧 복무처였고 따로 징발되지 않더라도 항상 군인이었던 것이다.²⁸⁾

3) 군역제도의 정비

(1) 군역의 일원화

조선조의 國役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바로 軍役이었다. 따라서 군역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국민개병제이므로 양인 이상의 모든 男丁이었으며 나이는 16세부터 60세까지였다. 그러나 이른바 양반계층으로 표현되는 지배층은 벼슬을 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 아래 사실상 군역에서 벗어나고 군역은 절대 다수인 양인 농민만이 졌다.

고려 말의 공양왕 3년(1391)에 이루어진 科田法에서는 군전을 받는 층이 있었다. 그러나 국방상 주도적 위치에 있던 시위군·기선군과는 구별되는 계층이었으며 기선군에게는 사실상 토지가 급여되지도 않았다. 이 때의 군전은 受田牌라 불리는 한량관리가 5결 내지 10결의 토지를 분급받고 赴京宿衛의임무를 띠고 있었다.²⁹⁾ 그러나 사실상 국방력의 주체는 기선군과 시위군이었다. 기선군은 지방에서 수군도절제사 등에 의하여 지휘되며 선상 근무를 하는 해군인데 반하여 시위군은 각도 도절제사에 의하여 초출되고 또 상경숙위하도록 되어 있는 육군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일반의 양인 농민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 이외에 따로 한량관리가 군전을 지급받으며 부경숙위하는 이원적인 군역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병혁파가 이루어지고 태종이 집권하면서 갑사·별시위·내금위 등의 금군이 잇따라 복립 신설되면서 이원적인 군역체제는 균형을 이룰 수

²⁸⁾ 閔賢九, 앞의 책, 236쪽.

^{29)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공양왕 3년 5월.

있었다.30) 이와 같은 이원적 군역체제는 태종대를 거쳐 세종대까지 지켜졌다. 이러한 이원적 군역의 파악방식에 변화가 온 것은 중종 말엽이었다. 즉 세종 22년(1440) 이전에 3,000명에 불과했던 갑사가 세종 31년에는 7,5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중앙군의 각 병종이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변차수를 늘리고 근무기간도 단축되었으며 하번의 중앙군은 모두 각 지방별로 거주지 영진에 錄籍하는 동시에 각 관별로 수령의 책임 아래 파악하는 사례가 나타났다.31)

세조 원년(1455) 9월에 이르러 巨鎭을 설치하면서 갑사 등 각종 중앙의 특수병과 시위군・영진군 등 지방군을 일률적으로 각 익에 소속시키고 이들의 군적도 중익과 도절제사영・병조에 각각 비치하며 이들의 번상도 중익→도 절제사→병조의 계통을 밟아 처결하도록 함으로써 군역의 파악은 일원화되었다.32) 즉 모든 군사는 그 거주지에서 파악하도록 일원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종대 후기의 전세제도의 정비와 徭役 부과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군역의 질적인 변화가 추구되었고 또한 이 당시는 조선조 정권이 안정되고 정치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여서 수도나 궁궐의 시위병을 위하여 많은 군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국방병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결국 군액은 거주지별로 파악하고 단기간으로 줄어든 번상숙위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지방의 군사력을 이루게 함으로써 京軍役을 별도로 파악하던 군역 파악방식은 자연히 지양되어 군역 파악의 일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33)

(2) 보법의 성립

군역 부과의 대상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직접 군복무를 하던가 아니면 현역을 도와주는 보조인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현역병인 戶首와 이를 도와주는 奉足制로 나타난다.

고려 말 이후 국방을 담당하였던 시위군이나 기선군은 대개 양인 농민이

³⁰⁾ 閔賢九, 앞의 책, 62~67쪽.

^{31) 《}世宗實錄》 권 88, 세종 22년 2월 기묘 • 권 106, 세종 26년 9월 정해.

^{32) 《}世祖實錄》 권 2, 세조 원년 9월 계미.

³³⁾ 閔賢九, 앞의 책, 69쪽.

었지만 군역의 대가로 토지의 급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현역에 복무하는 호수는 무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왕복에 드는식량의 지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정발되어 복무하는 자 이외의 장정이 그 부담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봉족인 것이다.

건국 초기인 태조 3년(1394)에 마병의 경우 5丁이 1군을 내고 보졸의 경우 엔 3정이 1군을 내도록 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동 6년에는 다시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人丁은 품관 마병의 경우 봉족 4명, 무직 마병의 경우 봉족 3명, 보병의 경우는 봉족 2명을 분급하며 봉족은 가능한 한 내외 족친으로 충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군정으로 하며, 船軍도 3정이 병정 한사람을 낸다는 규정이 강조되었다.34)

그러나 초기의 혼란이 극복되고 차츰 제도가 완비되기 시작한 태종 때에 와서 국역 전반에 걸쳐 신분의 차등, 전결의 다소 등에 따라 봉족의 수급에 차등이 정해졌다. 즉 태종 4년(1407)에 이르러 국역부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봉족의 수가 公定되었다.³⁵⁾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군역 부과자가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군역 자체에 상당한 병종별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무군 역인 정군이었다. 따라서 군역을 직접 담당하는 정군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로 충당한다는 원칙이 성립됨으로써 초기에는 토지의 다소에 따라 봉족호의 수급에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군역의 대상자는 인정이기 때문에 戶보다 인정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 인정은 대체로 자연호 및 혈연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었는데 3정 1호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호 중심의 3정 1호 문제는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즉 10정이 넘는 富戶인 경우와 반대로 1정이나 2정밖에 없는 貧戶 등이 뒤섞여 있음으로써 立役 부담의 경감 내지는 과다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입역의 路程 등도 문제가 되는 혼란이

^{34) 《}太祖實錄》권 6, 태조 3년 8월 기사·권 11, 태조 6년 2월 갑오·권 15, 태조 7년 9월 갑신.

^{35) 《}太祖實錄》 권 7, 태조 4년 5월 계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각종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2정 1보를 단위로 하는 保法의성립이었다. 즉 세조 때에 와서 5위와 진관체제가 완비되기 시작하여 모든 의무 군역자들이 거주지 단위로 파악됨으로써 군역도 일률적으로 확대시키면서 號牌法을 강화하고 人丁搜括을 적극적으로 펴는 동시에 세조 10년 (1464)에는 보법을 마련하였다.

세조 10년 10월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 軍籍使의 携行事目의 규정에보면 "2정을 1보로 하고 田 5결을 1정에 준하도록 하되 奴子도 봉족수로 계산한다"36)고 하였다. 따라서 과거 3정 1호의 자연호 단위에서 2정 1보와 인정 단위의 보법이 성립된 것이다. 이제는 과거 자연호의 단위에서 벗어나 인정수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짐에 따라 인정이 많으면 많은 보가 성립되고 單丁인 경우에는 다른 호와 아울러 보를 만들게 해서 作保에 공정성을 기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정군 가운데 토지의 다과 및 노자의 다과 등까지도 給保 내지는 군역부과의 기준으로 삼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역부담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경제적 고려는 결국 토지나 노자가 많은 자에 대하여는 급보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기재된 보병은 세조 때의 보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대토지 소유자인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토지의 다과에 관한 것은 고려의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으며 노자의 경우도 准丁의 반수만을 保로 계산하여 경제적으로 유족한 자가 사실상이득을 보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급보규정을 군역에 한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7)

無 保……親軍衛・別侍衛・族親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

1 保……步正兵・破敵衛・壯勇衛・隊 卒・彭 排・漕 軍

1保丁……騎正兵・水 軍

2 保……甲士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의 수급은 경제적인 면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다

^{36) 《}世祖實錄》 권 34, 세조 10년 10월 을미.

^{37) 《}經國大典》 권 4, 兵典 給保.

만 신분이나 기능면을 고려하여 분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적으로 상층에 속하여 보가 없더라도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은 벼슬길이 열려 있었다. 正兵 등은 보도 적지만 의무군역이기 때문에 급료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중앙군의 핵심인 갑사같은 경우는 그 신분과 기능이 인정되어 보의 수도 많지만 遞兒職³⁸⁾이기는 하나 급료도 지급되는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戶·保제도는 성립 초기부터 각종 폐단을 수반하였으며 조 선조 중기 이후에는 보법의 문란을 가져오고 말았다.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1) 5위체제의 확립

조선 초기의 10사제도가 5軍・5陣 체제를 기초로 하여 문종대에 5사제도로 정리되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5사체제는 세조대에 이르러 조선왕조 초기의 군사제도가 확립되면서 중앙군도 5위체제로 확립되었다. 즉 세조 3년(1457)에 지금까지의 5사체제를 전면 무시하고 여러 군사를 그병중에 따라 특정한 위에 속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중·.좌·우·전·후의 5위의 이름은 5사의 것을 본뜨게 됨으로써 5사는 전법상 편성인 5위에 병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개혁에서는 중앙군의 군사지휘권이 五衛鎭撫所로 넘어갔으며 또한 지방에서 번상하던 시위패(뒤의 정병)가 번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39)

이것은 뒤에 다시 5위에 편입되지만 의무병역의 변상이 얼마나 어려운가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방의 시위패가 5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5위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 듯하다. 5위에는 속해 있지

³⁸⁾ 李載龒、〈朝鮮前期 遞兒職에 대한 考察〉(《歴史學報》35・36, 1967).

^{39) 《}世祖實錄》 권 7, 세조 3년 3월 을사.

않지만 大閱과 講武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시위패는 역시 지방별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당시에는 명칭상으로는 5사 25령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5위 25부, 즉 領을 部로 개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5사의 영은 각종 군사가 고르게 분속됨으로써 구성원의 수가 같았으나 5위 체제에서는 인원수가 같지 않은 각 군사가 병종별로 각위에 속하기 때문에 5위 25부는 5사 25령과는 수에서 다른 것이었다.

세조 때에 처음 개편된 5위제도와 그 소속 병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中 衛(義興術)……甲 士・近 仗
- 左 衛(龍驤衛)……別侍衛・攝六十
- 右 衛(虎音衛)…… 忠順衛・防 牌
- 前 衛(忠佐衛)……忠義衛・受田牌・銃筒衛
- 後 衛(忠武衛)……忠贊衛・京侍衛牌・別 軍

이들 5위의 각 병종은 대개 신분상의 특권으로 명복상의 병역을 거쳐 관직에 나아가는 병종과 試取에 의하여 선발되고 녹봉을 받는 병종들로 사실상 5위의 병력은 이들 직업군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위패의편입 여부가 5위의 본질을 좌우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세조 때에 성립된 5위제도는 25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의 다과가 고르지 못하다는 이유와 또 병종의 개변 등으로 말미암아 예종 때의 두 차례에 걸 친 재조정을 거쳐《經國大典》에 명문화되었다.

이를 《경국대전》에서 보면 다응과 같다.40)

義興衛(中衛):甲十・補充隊

中 部:京中部・開城府・京畿楊州・廣州・水原・長湍진관군사

左 部:江原道江陵・原州・襄陽진관군사

右 部: 忠淸道公州・洪州진관군사

前 部: 忠州・清州진관군사

後 部:黄海道黄州・海州진관군사

龍驤衛(左衛):別侍衛・隊 卒

中 部:京東部. 慶尚道大邱진관군사

左 部:廣州진관군사

^{40)《}經國大典》 권 4, 兵典 京官職 五衛.

右 部:晋州진관군사

前 部:金海진관군사

後 部:尙州진관군사

虎賁衛(右衛):族親衛・親軍衛・彭排

中 部:京西部, 平安道安州진관군사

左 部:義州・龜城・朔州진관군사

昌城・昌州・方山・麟山진관군사

右 部:成川진관군사

前 部:寧邊・江界・碧潼진관군사

碧團・高山里・渭原・理山・寧遠진관군사

後 部:平壤진관군사

忠佐衛(前衛): 忠義衛・忠贊衛・破敵衛

中 部:京南部,全羅道全州진관군사

左 部:順天진관군사

右 部:羅州진관군사

前 部:長興・濟州진관군사

後 部:南原진관군사

忠武衛(後衛):忠順衛・正兵・壯勇衛

中 部:京北部・永安道北靑진관군사

左部:甲山진관군사、三水・甲山진관군사

右 部:穩城・慶源・慶興진관군사

柔遠・美錢・訓戎忍관군사

前 部:鏡城・富寧・會寧・鍾城진관군사

高嶺・潼關진관군사

後 部:永興・安邊진관군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군을 이루는 거의 모든 병종이 5위에 편입되어 입직·숙위와 시위 및 수도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진관을 망라한 지방군사까지 위별로 분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군은 각 지방의 절도사에게 지휘권이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지방군의 분속은 그들이 직접 면상하여 수도방어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 등에 대비하여 전국의 면상군사를 거주지의 전관별로 파악하고 5위에 분속시킨 데 불과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보면 5위는 특수병들 이외는 구체적인 부대로서보다는 전국을 망라한 하나의 훈련체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5위에 속해 있는 각 병종은 모두 중앙군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5衛都摠府가 이것을 통괄하며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행정적인 면에서 지휘를 받고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오위도총부는 5위의 군무를 장악하고 관원으로 도총관(정2) 5명, 부총관(종2) 5명, 경력(종4) 4명, 도사(종5) 4명으로 되어 있다.

2) 5위의 병종

5위의 성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속해 있던 병종은 모두 13개 병종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때로 신분도 서로 다르고 수나 임무도 같지 않았으며 근무 연한이나 대우도 거의 같지 않았다.

이러한 각 병종은 대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왕실 호위를 이유로 왕실의 먼 친척이나 대신들의 무능한 자제 및 공신자손 등 특권지배층에 대한 특별대우의 하나로 편제된 병종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군사적인 기대를 바랄 수 없는 존재로 족친위・충 의위・충찬위・충순위41) 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이러한 계열에는 양천의 구 분이 불명한 賤役者에게 賤을 면하고 양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 여 설치된 보충대 등도 이에 속할 수 있다.42)

둘째는 일정한 무예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일종의 직업군인으로 서울에서의 각종 시위는 물론 때로는 동·서북면의 방위까지 담당하는 기간병력을 이루는 특수병들이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무예에 뛰어난 양반자제도 많이입속해 있었으나 때로는 장용위와 같이 천인이 속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계열에 속한 병종으로는 별시위·갑사·친군위·파적위·장용위·팽배·대졸 등이 있다.

끝으로 양인의 의무적인 군역으로서 戶·保에 의하여 번상숙위하는 正兵이 있다. 대전에 의하면 이들이 갑사와 더불어 가장 수가 많은 병종이다. 정병이란 이름은 세조 5년(1459)부터 사용된 것인데 초기에는 시위패·시위군

⁴¹⁾ 車文燮、〈鮮初의 忠順・忠贊・忠義衛에 대하여〉(《史學研究》19, 1966).

⁴²⁾ 有井智德, 〈李朝補充軍考〉(《朝鮮學報》31·22, 1963).

으로 불려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조 10년(1464)의 기록에 의하면 각 지방의 영진군 등도 모두 정병으로 합속되어 중앙에 번상하는 정병과 각 지방의 요새지에 부방하는 留防 정병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정병은 8번 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에 규정된 정병의 수는 알 수 없으나성종 3년(1472)의 기록에 의하면 번상병의 총원이 42,500명으로 이를 8번 교대로 나누어 보면 실제로 복무하는 병력은 5,710명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번상이 이루어질 경우 갑사와 더불어 가장 많은 수를 이룬다.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5위 소속의 병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43〉

〈丑 1〉

5위소속 병종 일람표

병종	설치 년도	시취과목	신 분	군사적 기 능	원 액 (상번액)	분번(복무)		체 아	가계 일수	거관잉 사한계	급보
甲士	정종	木箭・片	양반 • 양	衛兵	14,800	5번		종4품	62	종4품	2보
	2년	箭・騎射	인상층	(중앙	(2,960)			이하	양계	(실)	양계
		・騎槍		군의		/	/	2,000원	114	정3품	2보1정
		(단, 착호		주력)		/					
		갑사는走				/					
		力첨가				/	6삭				
別侍衛	정종	木箭・片	양반	衛兵	1,500	2번		종4품	48	종3품	없음
	2년	箭・騎射			(300)	/	/	이하		정3품	
		・騎槍					6삭	300원			
親軍衛	태종	木箭・鐵	양반	親兵	40	2번		종4품	56	종3품	"
	초	箭・片箭	(함경인)		(20)	/		이하		정3품	
		・騎射・						20원			
		騎槍					12삭				
破敵衛	세조	木箭・片	양인	步軍	2,500	5번		_	106	종5품	"
	5년	部			(500)	/				(影)	
		走(一走)								정3품	
		力(一力)					4삭				
壯勇衛	세조	木箭	천인	奴軍	600	5번	\overline{Z}	종6품	62	종6품	1보
	5년	走(一走)			(120)	/	/	이하		(影)	
		力(一力)				\angle	6삭	15원		정3품	

⁴³⁾ 이 표는 閔賢九, 앞의 책 및 千寬宇,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史學研究》18, 1964)과 車文燮, 앞의 글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彭排	태종 15년	走(三走 이상) 力(三力 이상)	신량역천	役軍	5,000 (1,000)	5번 4삭	종8품 이하 1,020원	1,080	종8품 (實) 정6품	1보
隊 卒	태종 15년	走(三走 이상) 力(三力 이상)	신량역천	使令軍	3,000 (600)	5번 4삭	종8품 이하 601원	1,080	종8품 (實) 정6품	1보
正兵	세조 5년		양 인 양반하층	義務 兵役	정액없음 42,500 (5,310) 성종 3년	8번 2삭 (留防 4 번 1삭)	종5품 (影) 정3품	62 留防 245	종5품 (影) 정3품	騎1보 1정 步1보
忠順衛	세종 27년		양반	勳位	정액없음	7번 12삭	-	75	종5품 (散) 정3품	없음
族親衛	국초		양 반 (왕 실원친)	勳位	정액없음	장번	종5품 이하 23원	644	종5품 (散) 정3품	"
忠義衛	세종 즉위 년		양 반 (삼 공신자 손)	"	"	장번	종4품 53원	144	종4품 정4품	"
忠贊衛	세조 2년		양반(원 종공신자 손)	"	"	5번 4삭	종6품 이하 20원	39	종3품 정3품	"
補充隊	태종 5년		천인(양 반천첩자 손)	주로 使令軍 역할	"	4번 4삭	_	1,000	종9품 (雜)	"

세조 때에 성립된 5위체제는 중앙군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그 편제는 《경국대전》의 반포 이후로부터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제도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5위에 속해 있는 병종의 질은 저하되어 거의 허구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무 연한의 장단, 신분체제의 不均, 대우의 불합리, 役의 난이, 경제기반의 불안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⁴⁴⁾

⁴⁴⁾ 車文燮, 앞의 책.

이에 따라 《경국대전》의 성립 이후에는 군사제도가 해이해지고 또한 代立의 폐단이 발생하는 등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법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국의 각 진관별 군사 파악을 바탕으로 했던 6위체제는 대열·강무 등의 停廢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더욱 무력해졌으며 변란시에는 국방병력으로서의 지방군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3) 금 군

중앙군의 핵심인 5위제도가 성립되면서 이들 병중은 주로 수도방어의 병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병인 禁軍은 5위 이외의별도 정예부대로 편제되었다. 이같은 금군은 고려 말의 2군 6위와 함께 왕권호위부대로서 都府外・儀仗衛・堅銳府・忠勇衛 등이 각종 금군의 구실을 한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금군은 成衆愛馬로 불려져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병이 혁파되고 태종이 즉위하면서 별시위·갑사·내금위·내시위 등 중앙군의 근간을 이루는 병종들이 잇따라 설치됨으로써 성중애마는이에 흡수 소멸되었다. 그러나 세조 때에 5위체제가 정비되면서 서서히 금군과 위병의 차이가 생겨났다. 즉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으로서 내금위· 검사복·우림위 등이 설치되어 5위체제와는 달리 또 하나의 중앙군을 이루게 되었다.

內禁衛는 태종 7년(1407) 10월 궁중에서 입직 숙위하던 잡다한 병종을 정리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처음에는 태종 9년에 설치되었던 내시위와 함께 三軍府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 6년(1409)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병합하여 명실공히 금군의 핵심이 되었다. 세조가 중앙군을 5위제도로 개편할 때 독립한 친위대로서 내금위절제사의 지휘 아래 하나의 군영을 이루었다. 절제사는 세조 5년(1459)에 內禁衛將으로 개명하여 법전화하였다. 내금위는 타관이 겸임하는 장(정2품) 아래 모두 190인밖에 안되는 소수였으나 시험에 의하여선발되어 금군의 중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長番으로 정3품

1인, 종3품 1인, 종3품 4인, 종4품 7인, 종5품 18인, 종6품 28인, 종7품 49일, 종8품 39인, 종9품 44인으로 190인 전원에게 품계가 주어진 병종으로 모두 遞兒祿을 받는 가장 대우가 좋은 병종이었다. 내금위는 법전화된 이후 만호 등 외임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預差內禁衛制까지 도입하였으며 연산군 때에는 한때 잠시동안 衝鐵衛로 개칭되기도 했다.45)

내금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기병으로 이루어진 금군에 겸사복이 있었다. 이는 궁중의 輿觀을 맡았던 내사복시와의 관련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며 세조 10년에 제도화하여 내금위와 함께 금군의 쌍벽을 이루었다. 이들도 타관이 겸하는 겸사복장(정2품) 아래 정원은 50인으로 모두 체아직을 받았다. 즉 정3품 1인, 종3품 2인, 종4품 5인, 종5품 6인, 종6품 9인, 종7품 6인, 종8품 9인, 종9품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46)

《경국대전》의 성립 이후에 금군으로 羽林衛가 성종 23년(1492) 4월에 설치되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원은 관료들의 자손이기는 하나 첩자라는 조건 때문에 관계로의 진출이 극히 제한되었던 庶孽 신분층이었다. 역시 타관이 겸하는 우림위장 2인 아래 50인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전원 체아록을 받았으나 그 지체가 겸사복이나 내금위보다는 떨어지는 것이었고 이들은 다른 금군과는 달리 신분적인 제약성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給保의 규정이 별도로 설정되었다. 우림위도 연산군 때에는 한때 폐지되었다가 중종이즉위하면서 다시 복설되었다.47)

내금위장·겸사복장·우림위장은 금군의 지휘관인데 內將이라 하여 행정상으로 병조판서의 총령 아래 內三廳이라 했으며 뒤에는 유음자제가 많이 채용되었다.

또한 금군구실을 한 것으로는 중종 때에 설치된 한량 중심의 定虜衛와 성종 때의 팽배·대졸·파적위 등에서 젊고 건장한 자로서 선발되어 국왕이 行幸할 때에 호종하던 淸路隊 등이 있었으나 법전화되지는 않았다.48)

⁴⁵⁾ 車文燮. 〈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史學研究》18. 1964; 앞의 책).

⁴⁶⁾ 南都泳、〈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⁴⁷⁾ 崔孝軾, 〈羽林衛研究〉(東國大碩師學位論文, 1977).

⁴⁸⁾ 車文燮, 〈中宗期의 定虜衛〉(《史學志》1, 檀國大, 1967).

이 밖에도 궁중과 관계되는 서반직으로 정식관제 밖에 있었던 宣僚官廳과 守門將廳 등의 관서가 있었다.

특히 선전관은 고려 말부터 있어온 제도로서 국초에는 8인을 궁중 안에 두고 마치 동반에 있어서의 승지와 같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중에 교대로 직숙하면서 사졸의 진퇴를 호명하는 形名과 왕의 出駕에 吹螺케 하는 啓螺・侍衛・傳命・符信出納 등 왕의 지근한 자리에서 모든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군사비서 기관이었다. 뒤에는 廳을 두고 인원도 70여인으로 늘어 났다. 초기 8인의 선전관은 정3품에서 종9품까지 1명씩으로 체아록을 받았으며 서반직으로서는 바람직한 淸宦자리였다.

수문장은 궁궐문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자들로 초기에는 일정한 관직이 없고 무관의 4품 이하를 윤번으로 임명하여 궁궐문을 지키게 했으나 이것도 뒤에는 정직을 두고 관청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군의 계급은 건국 초기에는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각위에 上將軍(정2품)·大將軍(종3품)·都護諸衛將軍(정4품) 등을 두고 그 밑의 각 영에 將軍(종4품)·中郎將(5품)·郎將(6품)·別將(7품)·散員(8품)·尉(정9품)·正(종9품)을 두었으나 곧 上護軍·大護軍·護軍·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隊長·隊副로 개칭하였다. 사직과 부사직은 주로 갑사가 담당하고 대장·대부는 流外庶人職으로서 이들은 모두 초기에는 봉록을 받았고 일반 병졸은 이들의 지휘를 받았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 대장·대부를 고쳐 9품직인 司勇으로 하고 세조 3년(1457)에 5위·5부제가 성립되면서 衛將·部將 등이 생기고 세조 12년에 다시 이것을 세분하여 법전화하였다. 이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49)

^{49) 《}經國大典》권 4, 兵典 京官職 五衛都摠府. 이 〈표 2〉는 閔賢九, 앞의 책에서 옮김.

⟨표 2⟩

품 질	품 계	직 함	인 원 수
정 3 품	折衝將軍・禦侮將軍	上護軍	9
종 3 품	建功將軍・保功將軍	大 護 軍	14
정 4 품	振威將軍・昭威將軍	護 軍	12
종 4 품	定略將軍・宣略將軍	副護軍	54
정 5 품	果毅校尉・忠毅校尉	司 直	14
종 5 품	顯信校尉・彰信校尉	副司直	123
정 6 품	敦勇校尉・進勇校尉	司 果	15
종 6 품	勵節校尉・秉節校尉	副司果	176
정 7 품	迪順副尉	司 正	5
종 7 품	奪順副尉	副司正	309
정 8 품	承義副尉	司 猛	16
종 8 품	修義副尉	副 司 猛	483
정 9 품	效力副尉	司 勇	42
종 9 품	展力副尉	副司勇	1,939

위 〈표 2〉에서 보듯이 군계급 체계가 오늘날과는 그 개념이 같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각 병종 자체가 그에 소속된 인원의 사회적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병종에 공통된 계급제도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정병인 경우 당번 때가 되면 兵馬官의 압령아래 상경하여 지정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중앙의 5위에 속해 있는 병종 가운데에는 체아직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종 9품 이상의 양반 체아직을 받아 근무하고 당번 중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았다.50)

《경국대전》에서 5위를 설명하는 가운데 상호군 이하 나열되어 있는 약 3,000명 가량의 5위의 인원수는 체아직 수급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위계와

⁵⁰⁾ 李載龒, 앞의 글(1967).

직명은 5위 병종 가운데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계급과 연관시킬 수 있다. 따라서 5위체제 안의 각급 직과는 5위 소속의 여러 병종의 일부에게 주어지는 한편 내금위나 겸사복을 비롯하여 각 처의 관원들이 수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5위의 각급 직함은 전체 군계급과는 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展力副尉로부터 折衝將軍에 이르기까지의 서반의 관계도 계급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가 5위체제에서의 군계급에 의탁해서 사실상은 군사관계 이외의 요원들에게도 이들 서반직을 주었던 점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 사회의 관료적 일면을 엿볼 수 있다.51) 5위체제의 부대편제의 기간은 卒一伍一隊一旅로 진법체제에 의하여 조직되었다.52) 이를 표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위 명 칭	卒	伍	隊	旅	
원 수	1	5	25	125	
지 휘 관		伍 長	隊 正	旅 帥	

즉 최말단의 단위조직인 伍는 군사 5명을 단위로 하는 조직인데 5진법에 의한 편성 원칙에 좇아 12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旅까지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성 원칙은 중앙의 5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군사조직인 留防體制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었다.

그런데 5위는 진법원칙에 의한 전투대형과도 같은 뜻을 갖는 것으로 인원 수에 관계없이 5위의 陣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지	휘	관	大 將	衛 將	部將	統將
진	단	위		衛	部	統
부대별편성단위		5衛	5部	4統		

즉 모든 진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위·25부·100통의 편성을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말단의 편성단위인 통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

⁵¹⁾ 閔賢九, 앞의 책, 165~167쪽.

^{52) 《}世祖實錄》 권 7, 세조 3년 3월 기사.

지는가에 따라 전체의 병력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가 통을 이룬다면 5위의 병력은 2,500명이 되며 여가 통을 이룰 때는 5위의 병력은 12,500명에 이르도록 되어 있었다. 부는 4통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은 步・騎가각각 2통으로 구성하도록 되었다. 그러므로 부라는 단위부대는 보・기의 병과가 합속되는 「제병과연합」의 단위부대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군령계통은 각급의 부대단위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휘관이 전사하는 경우 차하급 지휘관이 사형당하는 것이 당시의 군률이었던 것이다.53)

5) 수도방위의 실제

수도 한성에는 왕권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금군이 있고 또한 수도방위를 위한 5위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왕권의 보호와 직결되며, 이 왕권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수도방위와 직결될 수 있었다. 당시 사회는 치안과 방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두 행정적으로는 병조의 소관이기 때문에 치안이 곧 방위와 직결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들 금군이나 5위병들은 평시에는 주로 입직과 행순·시위 및 훈련에 종사하고 왕이 行幸할 때는 이를 扈駕侍衛하였고 일단 유사시에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도방위 부대로서의국방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6위의 지휘·감독기관인 五衛都摠部를비롯한 각 위가 있었던 군영의 위치를 살펴보면, 오위도총부는《萬機要覽》에는 '昌德宮 弘文館 서쪽에 있다'하였고, (漢京識略)에는 《東國輿地勝覽》의기사를 인용하여 '하나는 昌德宮 仁政殿 서쪽에 있고, 하나는 昌慶宮 弘化門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도총부의 지휘를 받는 5위에는 衛將所가 있었는데 그 위치를 《만기요람》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54)

外 所=義興衛……昌徳宮 동문인 泥洞

南 所=龍驤衛……昌徳宮 서문인 金虎門 안

西 所=虎賁衛……昌德宮 서문의 하나인 曜金門 안

東 所=忠佐衛……昌慶宮 동우문인 宣仁門 안(舊 瑞麟門)

⁵³⁾ 閔賢九, 앞의 책, 167~168쪽.

^{54)《}萬機要覽》軍政篇 1, 五衛.

北 所=忠武衛……昌慶宮 景化門 안

이상에서 도총부나 위장소의 위치는 국왕이 어느 궁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같다. 즉 왕이 慶熙官에 있을 때에는 이들이 경희궁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55)

그러면 다음에 5위군이나 금군의 기능을 입직·행순·시위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입 직

入直은 한 마디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궁궐을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금군이나 중앙군에 부과된 가장 큰 임무였다. 이들 장병의 입직 은 3일마다 교대하되 군사행정 본부인 병조 관원만은 매일 교대하도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위는 각 위의 1부씩이 궁궐에 입직하되 입직하 는 전날 저녁에 병조에서 분담 입직할 장소와 시간을 배정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도총부로 그 계획을 넘기면, 도총부는 이 공문에 의하여 차례로 각 위 에 통보하고 입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위의 위장들은 왕의 지명으로 분령하고 겸사복장, 내공위장 및 수문장 역시 왕의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수문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반 4품 이상 으로써 望差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행정의 책임관서인 병조의 당상관(판서 1, 참판 1, 참지 1) 1인과, 실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총부의 당상관(도총 관 5, 부총관 5) 2인은 中所에 입직하되 각각 그 청사를 설치하였다. 여러 위 는 숙직소 밖에 별도로 중소를 설치하고 겸사복과 내금위도 역시 각각 중소 곁에서 숙직하도록 하되 겸사복은 3번으로, 내금위는 5번으로 나누어 입적하 도록 하였다. 상호군이나 대호군・호군 등도 5번으로 나누어 護軍廳에 입직 하도록 하여 입직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들이 입직 교대하는 날은 여러 장수가 왕에게 숙배하고 받았던 擲奸牌를 궁궐 안에서 바치도록 하였다. 이 척간패는 위장이나 부장 기타 범행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순찰하는 장교 등이 휴대하는 원형의 목패로서 표면에「擲

^{55)《}漢京識略》 권 1, 慶熙宮內各司.

奸」이란 글씨를 새기고, 뒷면에는 「御押」이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병조와 도 총부는 이 척간패를 항상 받고 있었다. 따라서 궁성에 입직하는 모든 將士들은 병조와 도총부에서 일단 그 신원에 대한 척간을 받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하여도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 입직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야간척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보고한 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사들의 坐作진퇴를 호령하는 形名을 위하여 선전관 2명이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吹螺赤 2명을 데리고 대궐 근처에 숙직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만약 왕이 行在한 때에도 궁궐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으므로 留都하는 세 대장이 세 곳에 나누어 머무르고 매일 장소를 바꾸되 작은 일은 먼저 집 행하고 난 후에 왕에게 알리고, 처벌해야 할 사건이 생기면 행재 때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처는 병조에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빈틈이 없었다.56)

(2) 행 순

行巡은 입직과는 달리 부단히 궁궐 내외나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순의 기능은 5위군이 평시에 가지고 있는 큰 기능 중의 하나이다. 먼저 궁궐 안에서의 행순을 살펴보면 5위의 위장과 분장은 군사 10명을 인솔하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한 뒤에 이상 여부를 직접 왕에게 알리도록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성 내외의 순찰에는 사실상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충의위·충찬위·충순위·족친위와 왕의 금군인 내금위를 제외하고 군사기능을 가진 5위의 각 1부씩의 입직에서 교대한 출직군사를 병조가 두곳으로 나누어 정하고 행순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때그때 왕의 지명을 받은 巡將과 監軍 혹은 出入番將 등이 궁궐에 들어가 왕에게 숙배한 후 대궐 안에서 순찰패를 반납 및 수령하게 했으며 각 순찰분단의 領官이 받는 패는 순장이 전부 맡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그날 행순의 모든 책임은 사실상 순장이 지게 되어 있는데 이 순장은 고유의 직

^{56)《}經國大典》권,4,兵典入直擲奸.

책이 아니고 왕의 지명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순장은 대개 중추부의 知事(정2품, 6인) 이하 同知(종2품, 7인), 僉知(정3품 당상, 8인) 이상의 관이 추천 임명되었고, 부족할 때에는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첨지 이하로 낮은 行職 당상관을 추천·임명하였다. 행순의 실제적인 책임을 지는 영관은 상호 군·대호군·호군을 임명하고 부족할 때는 별시위 가운데서 6품 이상의 관을 임명하였다. 순찰 감독에 임하는 감군은 선전관이나 병조 및 도총부의 당하관을 추천하여 임명하였다.

그리고 궁성 4문 밖에 숙직하는 일도 병조에서 각각 상호군이나 대호군·호군 중의 한 사람을 정하고 부족하면 행직인으로 충당하였으며 그들에게는 正兵 5명이 배정되었다. 도성 내외에는 警守所가 있었는데 이 경수소에는 보병 두 사람이 그 부근의 주민 5명을 거느리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弓・劒・杖 등을 휴대하게 하여 나무로 만든 경수패의 하나인 更籤을 받아 숙직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민 가운데 노인이나 질병, 과부 등의 부양하는 자가 없는 사람들은 이 경수소 근무에서 제외되었으며 산골짜기에 있는 경수소에는 정병 5명이 배치되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키는 호군은 초저녁에 병조에서 요령인 鐸과 병조의 참의나 참지가 만든 야간순찰의 암호인 軍號, 즉 말마기[言的]를 받고 통행금지 시간인 人定이 되면 정병 2명으로 하여금 요령을 흔들면서 궁성을 순찰하게 하였고 4면의 경수소와 각 문도 차례로 이어받아 계속 순찰하다가 통행금지가 해제(罷漏)되면 그치도록 하였다. 이 사이에 경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순찰운용의 영관인 巡官은 매 시[更]에 궁궐을 순회하면서 4면의 경수소와 각 문에 나아가 경청을 회수하여 날이 밝으면 병조에 반납하였다. 뿐만 아니라 순장도 경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불시에 직접 경수소에 나아가 검찰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단속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으로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볼일 없는 사람의 통행이 금지됨은 물론 궁궐이나 도성의 문들을 일제히 닫아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행순하는 장졸만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궁성문은 병조의 注書와 도총부 당하관 그리고 열쇠를 관장하는 司鑰에 의하여 개

폐되었으나 그 열쇠는 승지에게서 받고 개폐 후에는 다시 반납하였다. 그리고 도성문은 호군과 장교인 五員이 각각 자기가 담당한 도성문의 개폐를 관장하고 교대할 때는 병조에 그 열쇠를 반납하였다. 만약 왕이 밖에 나가 있을 때에는 수문장이 열쇠를 관장하고 왕명에 의해서만 개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문을 폐쇄하고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 등으로 꼭 야간통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비상조치로서 통행을 허락하지만 서울의 안위를 위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데 야금 중이라도 다음의 세 경우는 통행이 인정되었다.

첫째, 급한 공무가 있는 관리, 질병과 장사·출산 등의 부득이한 일이 있어 통행을 해야 할 경우이다. 이럴 때 직접 순관이나 경수소에 피치 못할 사유를 보고하면 순관과 경수소는 사람을 시켜 경첨을 가지고 그가 목적하는 집까지보호해서 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병조에 보고하여 진실 여부를 조사시켰다.

둘째, 順廳에 통행금지 해제의 깃발인 通宵旗(밤의 통행을 허락하는 기)가 게양되었을 때는 비록 아무런 標信이 없다 하더라도 통행이 자유롭게 인정되었다. 통소기가 걸리는 때가 언제인지 대전에는 규정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명절이라든 가 혹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이 통소기가 게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야간통행을 함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병조·형조·의금부·한성부·수성금화사와 5부의 直宿員 등은 통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통행을 하려면 모양이 둥글고 한 면에는 「通行」이라 쓰고 또 한 면에는 「通行」이라 篆字로 낙인한 통행표신을 승정원에서 받고 또한 병조에서 군호를 받아 각각 그 관청의 아전과 사령을 거느리고 아무 때라도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통행표신은 이튿날 아침에 승정원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금 중에 도성문이나 궁궐문을 열어야 할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으로부터 급한 용무로 왕에게 啓達할 일이 있을 경우 도성문은 열지 않지만 전달은 되었다. 즉 이 때는 도성문을 지키는 책임자인 호군이나 요원이 문 틈으로 이를 받아 급히 궁궐 문까지 나아가서 상주하였다.

둘째, 정해진 시간 이외에 도성문을 여는데 있어서의 절차를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에서 도성문을 열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궁중에서 둥근 모양의 한 면에는 「信符」라 篆字로 쓰고 또 한 면에도 역시 전자로 「信符」라 인각한 개문신부를 내려야 가능하였다. 이 개문신부는 둘로 쪼개어 호군이나 오원이 右符를 가

지고 있는데 궁내의 左符가 내려지면 이와 맞추어 보고 맞을 때만 문이 열려졌다. 그리고 이들이 교대할 때는 반드시 병조에 반납하고 교대한 자가 다시 병조에서 우부를 받아서 간직하였다.

셋째, 궁궐문을 시간 외에 열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양이 네모나고 한 면에는 「開門」이라 쓰이고 뒤에 「御押」이 있는 개문표신을 사용하였으며 또 불시에 궁궐문을 닫아야 할 때도 역시 「閉門」이라 쓴 폐문신표를 받아서 닫았으며 긴급을 요할 때는 이 궁궐의 개·폐문표신은 도성문을 열고 닫을 때도 직접 통용할 수 있었다.

다음에 통금을 어긴 자나 군사가 군률을 어겼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 약 군관이나 경수고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통행하는 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일단 근처의 경수소로 넘기고 이와 같이 차례로 넘겨 순청에 구금시킨 후 다음날 행정관청인 병조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3품 이하관은 직접 구속하지 만 당상관이나 사헌부·사간원의 관리는 그들을 수행하고 있는 관청 하인인 根隨를 인질로 가두고 본인은 돌려 보내며, 도성 밖에서 이런 자가 있을 때 에는 경수소에 수감했다가 새벽이 되면 순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약 사 유를 속이고 야간통행을 위반한 자나 그 위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석방 해 준 자가 있을 때는 모두 군령으로 이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때그때 임시로 임명되는 순장의 직권 아래 행순의 막중한 사명이 지 켜져 서울은 철저히 방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막중한 사명을 가진 순 장은 도성 내외의 행순군사를 초저녁에 이름과 대조하여 점검하고 통행금지 가 해제된 후에 다시 점검하고 해산시키는 동시에 군사의 출결과 각 시간마 다의 이상 유무를 병조에 보고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다하였다. 그리고 행정 적으로 총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병조의 당상관은 모든 숙위, 행순인과 각 문의 파수일, 그리고 경수소 직숙인의 성명을 초저녁에 정해진 군호와 함께 밀봉하고 승정원을 통하여 왕에게 상신하고 왕으로 하여금 이를 항상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省記라고 하는데 대궐 내에 입직하는 여러 장수 와 선전관, 겸사복, 상ㆍ대호군, 호군 및 각 관청의 관리 및 순장, 순관 외의 출사는 이름은 쓰지 않고 총 인원수만 적었다.

위에서 기술된 것은 주로 야간의 순행에 관한 것이나 평시에 있어서도 궁궐이나 도성 내외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수소 이외에 그 문을 지키는

파수군을 고정 배치하였다. 즉 궁궐문은 병조가 5위의 기간병인 정병과 갑사를 차출하여 여러 곳에 분속시켰고 또 대졸 10명을 차출하여 광화문과 종묘문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도성문은 입직에서 나온 출직 보병으로써 파수하게 했는데 與仁・崇禮・敦義・東小門은 책임자로 호군을 임명하고 그 나머지 문은 司直 이하의 군관인 오원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대개 대문에는 30명, 중문과 대문의 좌우 협문에는 20명, 소문과 중문의 좌우 협문에는 10명의 군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종묘문은 4명, 도성문은 8명으로하여 각각 평시에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57)

(3) 시위·첩고·첩종

이 시위는 좁은 의미의 侍立을 뜻한다. 가령 왕이 군의 習陣을 친히 보기위한 의식인 대열이라던가, 강무 혹은 순회여행인 순행, 왕이 친히 행하는 수렵을 말하는 打圍 및 왕이 친히 행하는 국가 제사 등의 각종 행사가 있을때에 병조가 왕이 명령하는 대로 시위조건을 만들어 공문을 담당 군문에 보내면 그 시위조건에 따라 시위하였다. 이는 왕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왕이 친히 제사를 행할 때에는 旗鼓를 장비한 시위군이 제단 밖에 머물러 시위하였고 묘나 능에 제사지낼 때는 문 밖에 머물러 시위하였다. 만약크고 작은 국가정사가 있어 국왕에게 축하를 드리는 朝賀가 있을 때라든가연회가 있을 때에는 위장이 그 군사를 이끌고 궁정에 정렬 시위하게 했으며병조와 도총부 이하의 관직으로서 군무를 띤 자 및 겸사복은 왕의 가까이서시립하고 내금위는 별시위와 함께 궁궐 계단 위에 정렬하여 왕권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보통 고관들이 왕을 만나 상주하는 常參이 있을 때에는 입직하고 있던 장사들로 하여금 시위하게 하였는데 입직 장사는 궁정에 들어오는대로 각각 그 방향을 점하도록 하였다. 즉 東所로 들어온 자는 동쪽에서 방향을 점하여 시위하도록 한 따위다.

그리고 대내에 입직한 군사들을 집합시킬 때에는 큰 북을 계속하여 두드 렸는데 이것을 疊鼓라 하였다. 이는 평시에 있어서 비상에 대처하는 훈련이 라든가 혹은 실제로 비상에 처하여 왕권을 급속히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57)《}經國大典》 권 4, 兵典 行巡・啓省記・門開閉.

지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궁중에 있는 큰 북이 계속해서 울리면 각 문 을 지키는 자 이외의 입직한 모든 위의 군사는 勤政殿 뜰에 모여서 각각 그 방향을 점하고 정렬하였는데 병조는 思政殿 남문의 좌협문인 東閣門 밖에 시립하고, 도총부가 그 다음, 그리고 상·대호군, 호군이 이에 따랐으며 금군 인 내금위는 우협문인 西閣門 밖에서 시위하였고 겸사복은 왕의 바로 앞에 서 시위하였다. 이는 대궐 안에서의 뜻밖에 군사동원으로 시위하는 것이지마 는 왕이 만약에 군사들을 대열하고자 할 때는 궁중 누마루에 걸려 있던 대 종을 계속해서 울려 신호로 삼았는데 이를 疊鐘이라 하였다. 만약 대종이 계 속해서 울리면 입직하고 있던 모든 군사가 앞에서 본 첩고의 예에 의하여 모두 모이고 왕이 만약 근정전이나 다른 문에 나오면 그 나오는 곳을 따라 서 그 뜰에 모여 왕을 호위ㆍ시립하였다. 그리고 5위 소속의 군사들은 光化 門 앞길부터 종로, 흥인문까지 열을 지어 시립하고 위장 이하가 명을 받들어 영솔하였다. 이 정렬 시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의흥위의 좌부는 광화문 앞에 서고, 후부가 그 다음, 중부가 그 다음, 전부가 그 다음, 우부가 그 다음으로 열립했으며 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 등이 그 뒤에 열립하였는데 각 부의 차례는 의흥위의 예를 따랐다. 또 이 때는 군사뿐만 아니라 백관들도 그 소속 관청을 지키는 한 사람의 관리 이외는 모두 갑주를 입고 군기를 준 비하여 각각 궁문 옆의 조우 장소인 朝房에 모여서 명령을 기다렸다. 다만 국가의 기초가 되는 종묘와 사직의 관리들은 모두 그 소속관청을 그대로 지 키게 했으며 외국 사신들이 머물고 있는 객관의 인원은 객관을 떠나지 못하 게 하였다. 그리고 대궐 내의 모든 관청과 도성 밖에 있는 여러 관청도 각각 소속 관청에서 명을 기다리게 했으며 미처 대궐문을 나가지 못한 자는 조방 에 모이고 대궐문을 들어오지 못한 자는 문 밖에 모이게 하여 움직이지 못 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을 직접 모시고 있는 시신들은 경복궁 동문인 建春門 과 서문인 迎秋門에 모여서 명을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출직한 병조나 도총 부·위장·부장·선전관·사복·내금위 및 훈련원·군기시의 관리들은 본청 을 지키는 자 외는 모두 광화문 앞에 모여서 명을 기다리게 했다. 다만 군기 시는 두 사람이 명을 기다리고 나머지 사람은 본청과 직숙소를 지켜야 했다. 이는 군기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열이 있다고 해서 그 경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궁성 4문 및 도성 여러 문은 모두 표신을 대조한 후에야 출입할 수 있었으며 왕의 가마가 문을 나서면 표신의 대조를 풀었다. 58) 이러한 왕의 거동을 중심한 철저한 경비와 시위는 왕의 위용을 갖추는 데도 의의가 있겠으나 국권과 왕권이 사실상 왕권으로 귀일되었던 당시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군과 5위군은 왕권 보호를 중심한 입직·행순·시위 등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왕조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는 곧 왕권의 소재와 연결된 수도권의 방위와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금군과 5위군의 직무 수행의 기능이 수도방위제도와 직결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임진왜란을 계기로하여 5軍營이 차례로 설치됨으로써 경비 내지는 방위제도가 더욱 확연하게수도를 중심으로 정비되어 간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군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매월 2일과 16일에는 敎閱과 습진에 참가했으며 2월과 9월의 20일에는 서울 교외에서 병기 점검을 받아야 했다. 또한 평소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출직하면 助番巡緯 이외는 반드시 3일안의 하루는 훈련원에 나아가 습진이나 활쏘기 등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여기에서도 소관 부장 및 훈련원 당상관에 의하여 점검 시험되었으며 승진에도 도움을 받게 하여 사기를 높이는 등, 항상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였다.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1) 진관체제의 성립

鎮管體制의 성립은 동・서북면의 軍翼道체제가 전국화하면서 성립되었다. 종래까지는 연해안 지역에만 鎭을 설치한 방어조직은 내지 주현의 방어가

^{58) 《}經國大典》 권 4. 兵典 侍衛・疊鼓・疊鐘.

소홀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세조 원년(1455) 내륙지방에 거진을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고을을 분속시키는 조처가 취해졌다.59) 그리하여 전국의각도를 다시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중·좌·우의 3익으로이루어졌던 것이다. 가령 경기도의 예를 들어보면 광주·양주·부평 등 3개의 巨鎭과 교동·강화·개성부의 3개 獨鎭으로 이루어지며 거진의 경우 부근의 여러 고을을 중·좌·우익으로 편입시켜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60)

이 때의 군익도체제가 전국화하면서 몇 가지 규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각 익의 지휘관은 수령이 겸대하는데 중익 수령의 경우 某道某鎭中翼 兵馬節制使, 좌·우익 수령의 경우는 某道某鎭左右翼兵馬團練使·副使·判官 으로 지칭한다는 것이다.

둘째, 甲士·別侍衛·銃筒衛·近仗·攝六十·防牌·別軍·侍衛諸營諸鎭諸 浦軍士를 비롯한 모든 군사는 익에 속하며 번상·습진·취재도 중익을 중심 으로 각 익에서 관합하고 군적은 중익과 도절제사·병조에 비치한다.

셋째, 군령계통은 도절제사→중익절제사→제익의 계통을 이룬다.

결국 국방에 대처하는 군사단위로서의 군익도의 지위를 뚜렷하게 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의 이유는 남방지역에 대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군화된 중앙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북방의 군익체제에서 도입했던 것이다.

이같은 지방군제의 개편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군사조직에 포함하여 군사 지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국의 지방 군사조직이 비로소 일원화되어 남방 의 여러 지역과 북방의 요해처를 동일체계 속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세조 원년(1455)의 획기적인 대개혁에 의하여 전국화되었던 군익도체제는 세조 3년 10월에 진관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즉 주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좌·우익의 편성을 갖던 종래의 체제는 주요한 지역을 거진으로 하여

^{59) 《}世祖實錄》 권 2, 세조 원년 9월 계미.

⁶⁰⁾ 위와 같음.

나머지 주변지역의 제진이 그 휘하에 소속되도록 한 것이었다.61) 가령 경기도의 예에서 보면 종래 3개 도와 3개 독진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수원·광주·양주·강화·개성 등 5개의 진으로 나누어 그 주위의 고을들을 합속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의 3개 도로 나누었던 도 대신 진이란 명칭이 나타나는 점이다. 도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고려 이래 지방군의 파악단위로 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북방의 군익체제 정비에 따라역시 도를 단위로 삼았던 것인데 이 때에 비로소 진으로 바뀐 것이다. 행정구역상의 도와 혼동되는 복잡성을 피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종래 지방군사상의 요해지였던 진의 계열과 연결시켜서 요새지 군사기지로서의 거점적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종래 중·좌·우익의 체제가 지양되고 거진을 중심으로 제진이 이에 속하도록 한 것은 제진 각자에게 독자성을 부여하고 일원적 군사체제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휘계통에 있어서도 군익도체제 하에서는 中翼兵馬節制使에 명령권이 있다고 규정했지만 중익에 속한 단위지역이 여럿 있는 경우도 많아 혼란이 있었으므로 거진을 따로 떼내어 다른 제진과의 상하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의 개혁은 종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존치되었던 독진제를 지양하고 전지역을 망라하는 진관체제로 변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진관체제의 운용과 기능은 세조 4년에 재조정되었다.62) 중익의 기능이 거진으로 옮아갔으며 수령이 검대하는 각 진의 병마 명칭에서도 중익또는 좌·우익이란 부분이 없어지고 갑사 등 모든 군사가 거주지에서 군적에 등록되고 그에 대한 방대한 관할권이 거진에 귀속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진관체제로의 개편은 전국을 군사지대화하는 조직체로 묶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지방에는 시위패(군) 혹은 영진군·정군 등의 다원화된 군사의 명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세조

^{61) 《}世祖實錄》 권 9, 세조 3년 10월 경술.

^{62) 《}世祖實錄》 권 11, 세조 4년 2월 을묘.

5년 북방의 정군과 남방의 시위패 등을 正兵으로 합칭하고⁶³⁾ 세조 10년 영 진군을 정병에 합속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⁶⁴⁾

종래 남방 여러 도의 경우 각 관별로 시위군이 抄定되어 중앙에 번상하고, 또 영진군에 초정되어 각 도의 병영이나 연해지역의 진에 부방하던 체제와는 달리 각 관의 정병은 평시에 거주하는 지역의 방위력을 이루다가 번차에따라 상경하였고, 요해지에도 상주하는 留防正兵 수를 배당했던 것이다. 영진 내의 부방이 요해지에의 유방으로 되었을 뿐이지만 시위패와 영진군을함께 정병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전국의 각 지역을 진관편성으로 묶어서 균일한 국방체제를 이룩한 것에 상응하는 국방병력의 일원화 조치였다.65)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진관체제가 성립된 것은 전기한 바와 같이 세조 3년으로 그 뒤에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경국대전》에 법적으로 규정하여 조선 초기 지방군제의 골격을 이룬다. 세조 12년에는 각 도와 각 진관의 병마책임자의 명칭이 바뀌었으나 각 관의 수령이 절제사 이하를 겸임하는 원칙은 그대로 지켜졌다. 당시 개칭된 병마책임자들의 명칭을 보면 다음과 같다.66)

都節制使→節度使, 都節制使鎭撫→虞候, 團鍊使→僉節制使, 團練副使→同僉節制使, 團鍊判官→節制都尉

따라서 각도에는 兵馬節度使(=兵使)가 있어 도내의 陸守軍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主鎭이 있고 그 아래에는 牧使(정3) 등이 예겸하는 경우가 많은 첨절제사(府尹은 節制使)가 거진을 단위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말단 제진은 군수(종4) 이하가 동첨절제사 이하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병마절도사는 경기·강원도의 경우 單兵使이기 때문에 관찰사(종2)가 예 겸했지만 충청·전라・평안도의 경우는 전임병사 이외에 관찰사가 겸하는

^{63) 《}世祖實錄》권 18. 세조 5년 11월 기묘.

^{64) 《}世祖實錄》 권 34, 세조 10년 9월 경오.

⁶⁵⁾ 閔賢九, 앞의 책, 247~251쪽.

^{66) 《}世祖實錄》 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점병사가 또 있었으며 경상·평안도의 경우는 국방상 중요성에 비추어 관찰사가 예겸하는 겸병사 이외에 전임병사가 각각 2인씩 있었다. 관찰사는 한도의 행정책임자로서 군사관계 행정을 관장한다는 뜻에서 병사를 겸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군사 지휘관계는 주진의 각도 절도사(경상좌·우도, 함길은 남·북도)로부터 거진의 첨절제사로, 또 그로부터 제진의 동첨절제사로 연결되는 일원적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권을 專掌하는 관찰사는 여러 진의 병마관을 겸하는 수령들의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군사면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수군도 육수군의 진관편성에 좇아 진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미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각 도의 수군은 2명의 僉節制使 또는 都萬戶 등의 지휘 아래 각 浦에 만호가 딸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군의 진관조직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었다.

각 도의 수군 최고지휘관은 水軍節度使(=水使, 정3)였는데 강원도·황해도·평안도 및 영안도에는 육수군과 마찬가지로 관찰사나 병사가 겸하는 1인으로부터 3인의 수군절도사가 있었으며 경기, 충청도에는 1인의 전임수사와 관찰사가 겸임하는 1인의 兼水使가 있었고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각각 2인의 전임수사와 1인의 겸수사가 있었다.

〈표 3〉 鎭管 편성표

京畿道: 병사 1(관찰사) 수사 2(관찰사・경기수사)

관	찰 사	(병사・수사겸)	감영=漢城府 서문외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廣州진관) 광주목사	驪州・利川목사, 楊根군 수	광주・여주판관・砥平・陰竹・陽 智・竹山・果川 등 현감
	(水原진관) 수원부사	富平・南陽・仁川부사, 安山・安城군수	수원판관・振威・陽川・龍仁・衿 川현령, 陽城・通津현감
	(楊州진관) 양주목사	坡州목사・高陽군수	永平・抱川・積城・交河・加平현
	(長湍진관) 장단부사	江華부사・豊德・朔寧・ 麻田군수	連川・喬桐현감
수	사		수영=南陽・花梁灣
	(첨절제사)		(만 호)
	(月串진관) 월곶(강화)첨사	永宗浦(인천)・草芝粱(강호 喬桐粱(교동)만호(=교동호	화)・濟物梁(강화)・井浦(교동)・ 현감겸임)

忠淸道: 병사 2(관찰사・충청병사) 수사 2(관찰사 충청수사)

관	찰 사	(병사・수사겸)	감영=尙州
	좌병사・우후		병영=海美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충주진관) 충주목사	清風・丹陽・槐山군수	충주관관, 延豊・陰城・永春・堤 川 현감
	(淸州진관) 청주목사	天安・沃川・군수	청주판관, 稷山·木川·文義·懹 仁·천안·鎭川·報恩·永同·黃 澗·靑山 현감
	(公州진관) 공주목사	林川・韓山군수	マテ・・・・・・・・・・・・・・・・・・・・・・・・・・・・・・・・・・・・
	(洪州진관) 홍주목사	西天・瑞山・泰安・溫陽 군수	字子 ・ ・ ・ ・ ・ ・ ・ ・ ・ ・ ・ ・ ・ ・ ・ ・ ・ ・ ・
수	사・우 후	2	구영=保寧
	(첨절제사)		(만 호)
	(所斤浦진관) 소근포(泰安)첨사	唐津浦(당진)・波知島(서	산)만호
	(馬梁진관) 마량(庇仁차)첨사	舒川浦(만호)	

慶尙道: 병사 3(관찰사・좌병사・우병사 3(관찰사 좌수사・우수사)

관	찰 사	(병사・수사겸)	감영=尙州
	좌병사・우후	좌	-병영=蔚山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慶州진관) 경주부윤 (병마절제사)	울산・梁山・永川・興海 군수	경주관관・淸河・迎日・長馨・機 張・東萊・彦陽현감
	(安東진관) 안동대도호부사	寧海・靑松 부사, 醴泉・ 永川・豊基군수	・ ひ 字 관 관 , 義城・ 盈徳 현 령 , 奉 化・ 眞寶・ 軍威・ 比安・ 禮安・ 龍 宮 현 감
	(大邱진관) 대구부사	密陽부사, 淸道군수	慶山현령, 河陽・仁同・玄風・義 興・新寧・靈山・昌寧 현감
	우병사・우후	9	-병영=昌原
	(상주진관) 상주목사	星州목사, 善山부사, 金 山군수	상주・성주판관, 開寧・知禮・高 靈・聞慶・咸昌현감
	(晋州진관) 진주목사	陜川・草溪・咸陽・昆陽 군수	진주판관, 南海현령, 居昌・泗 川・三嘉・宜寧・河東・山陰・安 陰・丹城현감
	(金海진관) 김해부사	창원부사・咸安군수	巨濟・固城현령, 漆原・鎭海・熊 川현감

좌수사・우후	수영=東萊
(첨절제사)	(만 호)
(釜山진관) 부산포(동래)첨사 (京 職 겸)	豆毛浦(동래)・甘浦(경주)・海雲浦(동래)・漆浦(홍해)・包 伊浦(동래)・烏浦(영덕)・西生浦(울산)・多大浦(동래)・鹽 浦(울산)・丑山浦(영해)만호
우수사・우후	수영:巨濟・加背梁
(첨절제사)	(만 호)
(薺浦진관) 제포(熊川)첨사 (경 직 겸)	玉浦(거제)・平山浦(남해)・知世浦(거제)・永登浦(거제)・ 蛇梁(고성)・唐浦(고성)・助羅浦(거제)・赤梁(진주)・安骨 浦(웅천)만호

黃海道: 병사 1(관찰사) 수사 1(관찰사)

관	찰 사	(병사・수사겸)	감영=海州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黃州진관) 황주목사	平山・瑞興早사, 鳳山・ 安岳・載寧・遂安・谷山 信川군수	황주관관,新溪・牛峯・文化현령 ・兎山・長連현감
	(해주진관) 해주목사	延安・豊川부사, 白川군 수	해주판관, 甕津현령, 松禾·殷栗 江陰·康翎·長淵현감
	(첨절제사)		(만 호)
	(所江진관) 소강(옹진)첨사	廣岩梁(은율)・阿郞浦(장 芾乙浦(강령)・龍媒梁(해	연) · 吾叉浦(장연) · 許沙浦(풍천) · 주)

全羅道: 병사 2(관찰사・병사) 수사 3(관찰사・좌수사・우수사)

관	찰 사	(병사・수사겸)	감영=海州
	병사・우후		병영=康津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全州진관) 전주부윤 (병마절제사)	益山・金堤・古阜・錦山 ・珍山・礪山군수	전주관관, 井邑・興徳・扶安・沃 溝・龍安・咸悅・高山・泰仁현 라, 萬頃・臨陂・金溝현령
	(羅州진관) 나주목사	光州목사・靈岩・靈光군 수	나주・광주판관, 함평・高敞・長 城・珍原・茂長・南平・務安현 감
	(南原진관) 남원부사	潭陽부사・淳昌군수	남원판관, 任實, 茂朱·谷城·鎭 安·玉果·長水현감, 龍潭·昌平 현령
	(長興진관)	珍島군수	강진·해남현감
	(順天진관) 순천부사	樂安・寶城군수	光陽・求禮・興陽・同福・和順현 감, 綾城현령
	좌수사・우후	3	斗수영=순천梧桐津(현 麗水)

(첨절제사)	(만	호)
(蛇渡진관)	會寧浦(장흥)・達粱(영암)・呂	陽(흥양)・馬島(강진)・鹿島
사도(興陽)첨사	(흥양)・鉢浦(흥양)・突山島(台	는천)만호
우수사・우후		우수영=海南
(臨緇島진관) 임치도(咸平)첨사	黔毛浦(扶安)・法聖浦(영광) 於蘭浦(영암)・群山浦(沃溝) 만호	· 多慶浦(영광)・木浦(무안)・ · 南桃島(진도)・金甲島(진도)
(兵馬・水軍)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濟州진관) 제주목사		제주판관, 大靜・旌義현감

江原道: 병사 1(관찰사) 수사 1(관찰사)

관	찰 사	(병사・수사겸)	감영=原州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江陵진관) 강릉대도호부사	三陟・襄陽부사, 平海・ 杆城・高城・通川 군수	강릉판관, 蔚珍・歙谷현령
	(원주진관) 원주목사	春川부사, 旌善・寧越・ 平昌군수	원주판관, 麟蹄·橫城·洪川현감
	(淮陽진관) 회양부사	鐵原부사	楊口・狼川・伊川・平康・金化・ 安峽현감, 金城현령
	(첨절제사)		(만호)
	(삼척진관) 삼척포첨사	安仁浦(강릉)・高城浦(エ 만호	¹ 성)·蔚珍浦(울진)·越松浦(강릉)

永安道: 병사 3(관찰사・남병사・북병사) 3(관찰사・남수사・북수사)

관	찰 사	(병사・수사・영흥부윤겸) 감영=海州
		(동첨절제사·만호)	(절제도위)
	(영흥진관) 영흥부윤	定平부사, 咸興・高原군 수	영흥판관
남	병 사	(수사・북청부사겸)	병영=北靑
	(첨절제사)	(동첨절제사·만호)	(절제도위)
	(북청진관) 북청부사	端川군수	북청판관, 利城・洪原현감
	(安邊진관) 안변대도호부사	徳原부사・文川군수	
	(甲山진관) 갑산부사	雲籠(갑산)만호	
	(三水진관) 삼수군수		
	(惠山진관) 혜산(갑산)첨사		
	(첨절제사)		(만 호)

		浪城浦(안변)・道安浦(정	평)만호
북	병 사・우후・평사		병영=鏡城
	(첨절제사)	(동첨절제사·만호)	(절제도위)
	(경성진관) 경성부사	西北(吉州)・斜个洞(明川)・斜下北(辽子)・朱 乙溫(경성)・魚游澗(경성)만호	경성관관, 吉城‧明川현감
	(慶源진관) 경원부사	阿山(경원)・阿吾東(경 흥)만호	경원판관
	(會寧진관) 회령부사	豊山(회령)만호	회령판관
	(鐘城진관) 종성부사	防垣(종성)만호	종성판관
	(穩城진관) 온성부사	永建(온성)만호	온성판관
	(慶興진관) 경흥부사	撫夷(경흥)만호	
	(富寧진관) 부령부사	茂山(?)・玉連(?)만호	
	(訓戎진관) 훈융(경원)첨사		
	(潼關진관) 동관(종성)첨사		
	(高嶺진관) 고령(회령)첨사		
	(柔遠진관) 유원(온성)부사		
	(美錢진관) 미전(온성)부사		
	(첨절제사)		
			(만 호)
		造山浦(경흥)만호	

平安道: 병사 2(관찰사・평안병사) 수사 2(관찰사・평안수사)

관	찰 사	(병사·수사·평양부윤겸)	감영=平壤
		(동첨절제사・만호)	(절제도위)
	(평양진관) 평양부윤	평양서윤・中和군수	평양 판관, 龍岡・三和・咸從・ 甑山・順安・江西현령
병	사・우후・평사	(수사・영변대도호부사겸)) 병영=寧邊
	(永邊진관) 영변대도부사	雲山・熈川・博川군수	영변판관, 泰川현감
	(安州진관) 안주목사	안주 · 肅川목사 · 嘉山군 수	안주판관, 永柔현령
	(成川진관) 성천목사	徳川・价川・慈山・順川 祥原군수	陽徳・孟山・江東・殷山현감, 三 登현령
	(義州진관) 의주목사	鐵山・龍川군수	의주판관

(江界진관) 강계목사	楸坡(강계)・上土(강계) 만호	강계판관
(龜城진관) 구성부사	宣川・郭山군수	
(朔州진관) 삭주목사	仇寧(삭주)만호	
(昌城진관) <u>창성</u> 목사		
(碧潼진관) <u>벽동군수</u>	阿耳(理山)만호	
(渭原진관) 위원군수		
(寧遠진관) 영원군수		
(滿浦진관) 만포(강계)첨사		
(麟山진관) 인산(의주)첨사		
(方山진관) 방산(의주)첨사		
(昌州진관) 창주(昌城)첨사		
(高山진관) 고산리(강계)첨사		
(첨절제사) (宣沙浦진관)		(만호)
선사포(鐵山)첨사 (老江진관)		
<u>노강(안주)첨사</u> (廣梁진관)		
광량(三和)첨사		

육수군과 수군의 진관체제의 편성 내용은 위의 〈표 3〉과 같다.67) 진관체제가 전국을 하나의 군사조직의 체제 안에 편입되도록 했으나 모든 지역에 무장한 군사를 상주시킬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던 軍丁들은 평시에는 중앙에 번상하거나 특수 국방지대에 부방할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전지역에는 해당 진관에 소속되는 각종 군사가 비번인 채로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잠재적인 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략상 혹은 국방상 중요한 특수지대가 법전 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항상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것이 유방군으로 그 편

⁶⁷⁾ 이 표는 李相佰, 《韓國史-近世前期篇-》(震檀學會, 1962)에서 옮김.

⟨₩ 4⟩

전국 留防 일람표

	留防 4旅	留防 3旅	留防 2旅	留防 1旅	합 계					
忠 淸 道		주 진	庇仁・藍浦 泰安		9旅(1,125명)					
慶尚道	주 진	東萊・熊川	寧海・金海 泗川・迎日	南海・巨濟	24旅(3,000명)					
全羅 道		주 진	沃溝・茂長 扶安・順天	興陽・珍島	13旅(1,625명)					
黄海 道			康翎・長淵	黄州・遂安 豊川・甕津	8旅(1,625명)					
江 原 道				江陵・三陟	2旅 (250명)					
開城府	正兵留本府 巡綽									
平安道		15 网际末島								
永 安 道	- 兩界甲士・正兵 留防本邑 									

성 내용은 위의 〈표 4〉와 같다.6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방의 양도와 개성부를 제외한 전국 각 도의 국방상 요해지역에는 1旅로부터 4旅의 군사가 상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나는 영진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각도의 정병 가운데 유방을 주임무로 하는 유방 정 병이 교대로 복무하였다. 영진군의 후신인 이들은 번상 정병보다 약간 뒤지 는 존재였지만 1保를 지급받는 양인군사였다.

한편 개성부의 경우는 관내의 정병이 巡緯을 통해 주로 치안 유지에 좋사했으며 양계는 정병뿐만 아니라 감사도 양계 참사라 하여 모두 거주지에 유방하였다. 이는 이곳이 곧 국경지대의 요해지였으므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지키도록 한 것이다.

진관체제에 의해 전국의 국방체제는 제도상으로 일원화되고 또한 유사시에는 각 진관을 중심으로 自戰自守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일원화되었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유방과 번상의 실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雜色軍의 편제도 제도상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사실상의 국방태세를 반영하는 것은 바로유방군의 배치였던 것이다.69)

^{68) 《}經國大典》 권 4, 兵典 留防.

⁶⁹⁾ 閔賢九, 앞의 책, 259쪽.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세조 3년(1457)에 시작하여 12년에 지휘관의 명칭이 개편되면서 완성되던 진관체제는 《경국대전》 반포 이후 서서히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전국을 군사 지대화하고 방위망화했던 진관체제는 성립기반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실제 유사시에는 오히려 무력함을 드러내고 그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무력함은 중앙에 있어서 갑사 등 기간병이 군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국가의 경제기반 등이 허약했다는 점과 지방의 행정관인 문관 수령이 군사지휘권을 겸하게 됨으로써 군사를 잘 알지 못하여 국방에 무관심하게 되는 등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관체제 아래의 정병과 수군 등은 정해진 기한의 복무를 마치면 농민으로 돌아와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또한 徭役을 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하여이들에게 保人이 설정되기는 했으나 단위 보인의 수가 감소되고 있었으며 종래까지의 자연호 단위의 경제권을 위협하는 요소까지 있어 군사의 부담능력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때 放軍收布를 기도하기도 했다. 방군수포는 장정들에게서 布를 거두어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이고 일반 양인인 농민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서로가 편리한조치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방군의 대가로 받은 포가 군사적인 목적에 쓰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 수령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쓰여지면서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일반 농민들은 전세·공물·진상물·요역 등에 동원됨으로써그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으나 《경국대전》이 성립될 때부터 공공연히 행해졌고 이것이 중 때에는 일시적으로 장려되기도 했다. 진관체제의 기본 골격은 戶・保에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번상이나 유방 정병에 주어졌던 보인의 도망·유리등의 현상은 정병이 보인의 부담까지 져야 했고 또한 정병을 기피하는 자를위한 代立의 폐단이 나타나 진관체제 유지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수군은 그 폐단이 육수군보다 더 심한 편이었다. 그들의 역이 여러 병종

가운데 가장 고된 중역이었을 뿐 아니라 세습적인 요소가 많았다. 게다가 연해의 각 浦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근처 연해민이 아닌 자로 충당하는 등의 모순으로 사실상 진관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전국적인 방위망인 진관체제는 정규의 군사가 남아 있지 않았던가 또는 남아 있다 하더라도 군사적 기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가 아닌 계층까지 총동원하여 대처하는 이른바 「制勝方略」의 응급적 分軍法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즉 제승 방략적 분군법은 각 진관별로 자전자수하는 것과는 달리 유사시에 각 읍의 수령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배정된 방어지역인 信地로 가서 공동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승방략은 가까이 있는 각 읍의 군사가하나의 방어진지로 모여 대처하기 때문에, 후방지역에는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 2차로 방어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우려를 크게 내포한 전법이다.

제승방략은 중종 때의 남방에서의 三浦倭亂, 명종 때의 乙卯倭亂 등을 겪는 동안에 시도된 전략이며 이는 진관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데 대한 하나의 보완책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승방략의 특색은 각 지방의군사를 제도상으로 겸찰하던 소관 수령이 인솔하여 미리 할당된 방어진지에가서 대기하면 都元帥・巡邊使・防禦使・助防將 등 중앙으로부터 임시로 파견되는 京將과 본도의 병・수사가 제각기 지휘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순변사・방어사・조방장 등의 경장 파견은 삼포왜란 이래 계속되던 제도였으며 제승방략은 비전투원까지 동원하기 위한 거국적인 군사체제였으나 임진왜란에서 李鎰의 패배 등으로 보아 이것도 역시 거의 제구실을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방 특히 양계지방 등에서도 제승방략에 의한 분군법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남방과는 달리 경장의 파견은 제한되고 있었다. 설사 경장이 파견된다 하더라도 경장 중심의 지휘계통으로 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 절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휘계통을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 지 않았다. 이 점은 원래 북방의 지방관 편제가 대개 무인 중심으로 이루어 진 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선조 21년(1588) 3월 3일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이 상주한「請行制勝方略狀」은 남방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이에 의하면 함경복도에 賊變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물리치기 위한 방략으로 6진(온성·종성·회령·부령·경원·경흥)의 大分軍과 3읍(명천·길주·부령)의 分軍에 의하여 도내의 전시편제를 새로이 편성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는 유사시에 북도병마절도사를 중심으로 한 도내의 전병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려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일은위의 請行狀에서 남도의 군사를 북도의 유사시에 동원하여 남도의 각 읍의수령을 繼援將・遊擊將・助防將 등으로 차정하고 각 위에 분속 분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도의 제승방략도 근본적으로는 남방의 그것과 별차이가 없으나 다만 남방의 경장 중심체제와 북방의 병마절도사 중심체제의차이가 보여진다.

따라서 제승방략은 제승할 수 있는 방략이라는 의미로 그 역사적 의의는 종래 방어체제인 진관체제가 군사의 피폐와 지방관의 무성의 등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자 남아 있는 병력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적을 막는 방책으로서 남방에서는 경장의 파견이 잦아 새로운 분군법에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북방에서는 경장의 응원이 없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진관체제를 대신하는 전법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양자가 궤를 같이 한다. 북도에서 제승 방략을 체제화하는 데는 선조 21년 이일의 「청행제승방략장」에서 언급되었으나 이 때는 이미 선조 16년에 野人 尼蕩介의 亂 등 큰 전란을 겪고 이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전란은 북방에서 일어난 전란 중 가장 대규모적인 것으로 이 때까지 없었던 都巡邊使 이하 방어사·조방장 등이 경군을 이끌고 이곳에 처음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것은 그 동안 이 지방의 진관체제적인 방어태세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이러한 국난을 당하자 그허구성이 여지없이 드러났음을 볼 수 있다.

이 난이 있은 뒤 당시의 장수 이일이 이곳의 병마절도사로 부임하여 새로운 방어체제로서 을묘왜란 이후 시행되기 시작하였던 남방의 제승방략적 분군법을 도입하여 방어를 강화하였고 이듬해에는 정비를 마친 다음 야인 소탕전을 감행하여 전과를 올리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승방략이 지방군제로서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즉 진관체제의 자전자수하는 전술에서 제승방략적인 전술로의 이행이 임진왜란과 같은 큰 위난을 맞았을 때는 거의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왜란 중에 柳成龍 등이 진관체계의 재정비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1) 군령기관의 정비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조선조 건국초기의 군령기관은 고려 말의 三軍都摠制府를 태조 2년(1393)에 義興三軍府로 고쳐 새로이 관원을 임명함으로써 새 군령기관으로 성립되었다.70) 따라서 의홍삼군부는 삼군도총제부의 뒤를 그대로 이어 새로운 왕조의 집권화 시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흥삼군부의 설립은 첫 단계로 삼군총제부로부터 의흥삼군부라는 통수부가 서서 각 절제사가 임명되는 것과 둘째 단계로 그 위에 판사라는 직함을 갖는 장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기) 조선이 건국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치는 이의 설립과 함께 각 도병을 분령하고 있던 종친·훈신들이 중·좌·우절제사를 겸하게 되었으며, 조선 건국에 가장 공로가 컸던 정도전이 장관인 판사에 임명됨으로써 이들 절제사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당시의 의흥삼군부의 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70) 《}太祖實錄》 권 4, 태조 2년 9월 병진.

⁷¹⁾ 閔賢九, 앞의 책.

판사 밑에 각각의 절제사가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진무소가 있어서 의흥삼군부라는 군령기관의 참모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⁷²⁾

의흥삼군부는 사적 영속관계에 있는 모든 군사를 형식적으로나마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파악하려는 집권화 시책에서 이루어진 군령기관이었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흥삼군부는 10衛→10司에 대해 형식적이기는하지만 사병이 혁파될 때까지 감독·지휘권을 발휘하였다. 한편 의흥삼군부는 변상·숙위하는 각 도별 주군의 시위패를 진무소에 소속시킴으로써 규제하는 기능도 가졌다. 그러나 군적의 장악이 각 절제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진무소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방군의 관계에서는 도절제사에 의해 파악되는 육수군과 수군절제사에 의해 파악되는 기선군이 각각 방면군으로서 해당 지휘관에 의해 통괄되었다.73)

그러나 사적 영속관계에 있는 시위패의 존재 때문에 철저한 군령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으나 진법 훈련의 강화나 虎符 사용 등을 통해 집권화에 부응하는 중앙군 정비에 힘써 비대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집권화시책의 일환으로서의 군령권이 극소수의 건국유공자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권력 배분상의 불균형을 가져와 제도상의 무리가 생기게 되고 마침내왕자의 난이란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조선왕조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정종 2년(1400)에 사병의 혁파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대규모의 관제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병권 즉 군령체계의 문제였다. 전기한 바와 같이 의흥삼군부의 비대화로 초래된 제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이 때의 관제개혁에 나타난 군령체계상의 변화는 중추원과 의흥삼군부를 합속시켜 녹관을 갖는 三軍府를 확립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종적 관계를 수립하여 군령계통을 屢層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⁷⁴⁾

⁷²⁾ 鄭道傳,《朝鮮經國典》上,治典 軍官.

⁷³⁾ 閔賢九, 앞의 책.

^{74) 《}定宗實錄》 권 4, 정종 2년 4월.

이러한 개혁은 허구화된 중추원 기능을 흡수함으로써 삼군부의 위치를 확립하는 동시에 삼군부의 요원은 의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아 군령체계상 발명권을 갖는 재상이 발명권을 갖는 삼군부 총제의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정부와 군부를 구분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삼군부의 중·좌·우 3군은 각각 구분되어 통할하도록 하였다. 判三軍府事·知三軍府事 외에 각 군별로 총제가 있어서 소속 군을 통할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병혁파로 삼군부가 명실상부하게 군사를 장악함으로써 분할 통할하게 하여 병권의 편중을 경계하고 병권의 집중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의홍삼군부는 태종 원년(1401) 7월에 承樞府로 개편되었다. 이 때에 승정원이 없어지고 비서인 知申事 등이 승추부 소속으로 되면서 군기장악 기능과왕명출납 기능이 다시 통합되어 고려 초기부터 있어온 중추원제도로 되돌아간 것이며 최고위의 宰臣이 승추부의 판사를 겸임하도록 하였다.75)

이같이 왕명출납 기능과 군기 기능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승추부는 과거 태조가 집권화 시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의흥삼군부의 장관직이 정도전에게 맡겨지고 병권과 정권이 통합되다시피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河崙 등 태 종의 친신들로 하여금 정권과 병권의 주축을 겸장하게 하여 정치적 안정과 집권화의 촉진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태종 3년 6월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삼군도총제부가 설립되고 다시 승추부와 분리되는 별도의 체계를 갖게 되었다.76) 즉 중·좌·우군에 각각 도총제부가 설립되어 각군의 도총제부에는 都摠制 이하 摠制·同知摠制·僉摠制의 직위가 마련되어 각 군을 관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삼군도총제부의 성립으로 군령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다. 즉 군령상의 최고기관은 승추부로 군기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왕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삼군도총제부의 각군 도총제는 승추부에서 합의된 특명을 받고 다시 각 군별로 분속되어 있는 10司의 각각에 전령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추부의 요직을 의정부의 고위직을 갖는 자가 겸총함으로써 의

^{75) 《}太宗實錄》 권 2, 태종 원년. 7월 경자 · 권 4, 태종 2년 11월 경인.

^{76) 《}太宗實錄》 권 5, 태종 3년 6월 계해・을해.

정부가 승추부의 우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승추부가 군기를 장악하고 군 령상 최고의 지위에 있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군사 장악과 간격이 있었으므 로 전군 특히 중앙군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통합하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 았다.

또한 삼군도총제부를 각 군별로 설치한 것도 군의 장악 단계에서 비대한 병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령· 발병·거병에 의한 종적인 병권의 분산뿐만 아니라 횡적인 상호 규제를 위한 배려도 아울러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초기의 정치제도는 태종 5년(1405)에 이르러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군령계통에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가장 큰 정치제도의 변화는 과거정3품 아문에 지나지 않았던 六曹權이 정2품 아문으로 승격되었고 6조의 하나인 병조는 승추부의 기능을 병합하여 군령과 군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부상하여 군령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77) 이어서 6조의 분직이 정해지고 이른바 속아문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병조의 지위가 확실하게 되며 태종 8년 이후에는 의정부가 담당했던 서무를 6조로 귀속시키면서 6조 중심의 정치체제가 강화되었으며 병조권도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이다.78)

이같은 6조권의 강화로 군령상 병조와 삼군도총부의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즉 병조의 속아문제도를 통하여 삼군도총제부가 병조의 속아문화했으며 공문의 이송 절차에서도 상하관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따라서 강화된 병조가최고의 군령기관으로 되었으며 중·좌·우의 삼군도총제부가 병조로부터 명을 받아 10사의 말단까지 전령하도록 계통이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병력을실제로 장악하면서 광범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삼군도총부의 군령상지위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다.

또한 태종 8년(1408) 2월에는 領三軍事處라는 군령상의 합의기관이 나타난다.79) 이 영삼군사처라는 회의체는 병조에 의한 군령권의 獨專을 막고 군사운용의 실제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병조에

^{77) 《}太宗實錄》 권 9, 태종 5년 정월 임오.

^{78)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 · 권 15. 태종 8년 정월 임자.

^{79) 《}太宗實錄》 권 15, 태종 8년 2월 갑진.

의한 군령체계상의 단일화가 갖는 병권 집중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병조의 명령을 옮겨 받고 실제의 용병에 앞선 단계에서 군령의 확인을 기하 고 용병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삼군사처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군령권의 정비

군령체계는 태종 9년 8월 三軍鎭撫所가 설치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때에 태종은 병조가 군사관계에 전단적 권리가 있는데 대해 "병조는모두 유신으로 充選되어 있으므로 군사를 指劃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여 삼군진무소를 설치하고 都鎭撫・上鎭撫・別鎭撫 각 1인과 鎭撫 27인을임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문관 중심의 병조에 치우쳐 있는 병권에대한 배려에서 취해진 것이었다.80)

영삼군사처의 후신인 삼군진무소는 곧 의흥부로 개칭되었는데 이 때의 병조와 의흥부의 사이에는 관장사항이 구분되어 있었다. 즉 군령에 관한 사항은 의흥부가 장악하고 병조는 군정업무를 분장하도록 한 것이다.81)

당시 병조와 의흥부와 군사관계 업무분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兵 曹:銓選・儀仗・差備・禀命移文等事

義興府:考察軍士省記·監申巡牌出納·禀命出令等事

이로 보면 인사·의식 등의 군정은 병조가 장악하고 군령사항은 의흥부가 장악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의흥부에는 兼判事(2품)·知事(2품)·同知事(2품)가 각 1인씩, 그리고 3품 이하의 진무를 두었는데 2품의 고위직은 갑절로 늘었다. 의흥부가 군령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동안 삼군도총제부는 그 예하에 있으면서 군령체계는 의흥부·삼군도총제부·10사의 선을 따라 세워지고 있었으며 군정을 장악하는 병조가 의흥부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종 12년(1412) 7월에 이르러 의흥부는 혁파되고 군사관계는 다시

^{80) 《}太宗實錄》 권 18, 태종 9년 8월 경술.

^{81) 《}太宗實錄》 권 18, 태종 9년 8월 정묘.

병조에서 총령하게 되었다.⁸²⁾ 이로써 모든 군령은 병조가 王旨를 받들어 각 군에 行移하고 각 사는 다시금 10사에 전명하게 하는 병조에 의한 단일적 군령체계가 복구된 것이다.

대종 14년을 전후하여 삼군진무소가 복설되어 병조와 삼군진무소는 다시양립된 채 군령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⁸³⁾ 그러다가 대종 18년에 이르러 태종이 세종에게 전위하면서 병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전에 義勇衛를 설치하여 세자가 군사지휘를 분령하도록 했던 것인데 전위함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삼군진문소를 새로이 義建府 鎭撫所로 하고 의용위진무소를 삼군진무소로 했던 것이다.⁸⁴⁾ 그러나 의건부는 곧 폐지되어 삼군부(삼군도총부)에 합속되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병무를 전단하기로 한 태종이 형식상의 병권 양분상태를 불필요하게 여긴 때문이다.

이로써 군령계통은 병조와 三軍都鎭撫所가 양립된 채 삼군도총제부·10사의 상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세종 4년(1422)에 태종이사망하고 동 14년 3월에 삼군도총부는 혁파되고 중추원이 복설되어 숙위와경비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군령상의 기능은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 마침내 職掌이 없는 관서로 되어버린다.85)

따라서 군령계통상으로는 병조와 전무소가 양립된 채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세종대 전반 및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두 기관은 병치되어 군령을 장악하였다. 이같은 군령기관의 양립을 이해하기 위하여 군령계통상의 병조와 삼군진무소의 상호관계 및 군령체계의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조와 삼군진무소의 상호관계는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다. 당시는 이미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 기관의 관계 조정은 문무의 지위 및 정치권력의 편성 형식과 연결되었을 뿐 특정한 정치적 사건에 영향받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병조와 삼군진무소는 군령을 같이 장악하기로 되어 있었

^{82) 《}太宗實錄》권 24. 태종 12년 7월 무신.

⁸³⁾ 閔賢九, 앞의 책, 279~280쪽.

^{84) 《}太宗實錄》권 36, 태종 18년 8월 정해.

^{85) 《}太宗實錄》권 55, 세종 14년 3월 을해·권 56, 세종 14년 5월 신유. 《世祖實錄》권 29. 세조 7년 정월 무신.

지만 성격을·달리하는 두 기관은 서로 군령계통상 열세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세종 14년 9월을 전후한 일련의 논의를 통하여 당시 군사 지휘체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군령체계상 같은 지위에 있는 두 기관은 태종 때에는 군령의 移受는 큰일일 경우 병조 당상과 도진무가 함께 나아가 왕으로부터 승명하고, 큰일이 아닐 경우 병조 당청과 삼군진무소의 진무가 함께 승정원에 나아가 승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종이 즉위하면서 병권은 상왕인 태종이 전단 처리하였다. 그러나 상왕을 위해 별도로 代言(承旨)을 임명하지 않고 병조가 대행하게 되자 진무가 병조에 나아가 명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태종이 사망한뒤에도 소규모의 군령관계의 천명이 있으면 병조 당청이 승정원에 나아가 승명하고 진무소 진무가 다시 병조애 가서 숭명하였고 군령상 移文의 권리를 갖는 병조가 3군에 직접 이문하면서 삼군진무소에는 이문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하여 세종 14년 9월 삼군진무소는 국초의 의흥삼군부와 계열이 같음을 상기시키고, 군령을 승명할 때 병조 당청과 삼군진무소의 진무가 함께 승정원에 나아가도록 하고, 군무에 관련된 정령은 병조가 삼군 진무소에 대하여 빠짐없이 이문하도록 하며 진무의 劾罪도 병조에서 멋대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86) 그러나 일에 대한 반응은 삼군진무소는 병조의 예하기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詳定所 견해가 지배적이어 군령상열세를 회복하려던 진무소의 노력은 실패했으나 병조에 예속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알았다.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대종대에 군령기관으로 설립된 삼군진무소는 세종대 전반에 걸쳐 병조와 더불어 군령상의 기능을 가지고 존속하였다. 그러나 중앙군으로서와 5위체 제가 성립되면서 군령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문종 6년(1451) 7월 10사가 5사로 되자 3군은 중군 예하에 3사, 좌·우군 예하에 각각 1사를 두게되었다. 삼군진무소는 각 군별로 분할·통솔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86) 《}世宗實錄》 권 57, 세종 14년 9월 임신.

그 기구 자체에 변화는 없었으나 5사의 명을 받는 절차에는 변화가 초래되 었다.87)

그 후 세조 3년(1457) 4월 5사가 5위에 병합되어 부대편성과 진법체제가 하나로 되면서 중앙군제가 확립되는데 이 때에 삼군진무소는 五軍鎭撫所로 개칭된다.⁸⁸⁾

세조 12년 정월에 관제상의 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오위진무소는 五衛都 摠府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군령기관으로 등재되었다.89) 오위도총부에는 都摠管과 副摠管을 합하여 10인이 있었는데 이는 삼군진무소 때의 도진무가 바뀐 이름이나 그밖에 경력・도사가 각각 4명씩 있어서 행정상의 실무를 장악하였다. 타관이 겸임하게 되어 있는 도총관・부총관의 위계가 각각 정2・종2품으로 오위도총부와 5위의 군무를 장악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 병조・오위도총부・5위의 군령에 대한 실제적 관계는 어떠하였던가를 살펴보자. 먼저 오위도총부는 5위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다. 다만 5위라는 조직이 평시에는 병종별로 입직・행순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으므로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은 이것을 총지휘하였으며 5위라는 군사조직에 대한 별도의 사령부와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오위도총부였다고 생각된다.

5위와 병조와는 군령상 상하관계에 있었다. 즉 군사기관으로서의 5위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권은 병조에게 달려 있는 것이었다. 비록 군정에 대한 사항에서의 상하관계라고는 하지만 군사관계 전반에 대한 병조의 권한은 자연히커지게 마련이었다. 인사문제를 포함한 군무 일체가 병조 소관이기 때문에군령계통면에서 병조는 5위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오위도총부와 병조의 관계는 횡적인 협조관계에 놓여 있었다. 오위도총부는 6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군령기관으로서 그 지위는 확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위도총부의 도총관은 종실 중에서 또는 고위관리 중에서 10명이 兼攝하는 것이었고 그 관원으로도 경력과 도사가 각 4명씩 있을 뿐 관서로서의 구성은 그다지 짜임새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5위 병력에

^{87) 《}文宗實錄》권 9, 문종 원년 9월 신묘.

^{88) 《}世祖實錄》 권 7, 세조 3년 4월 갑오.

^{89) 《}世祖實錄》 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대한 입직·행순을 감독하는 것이 실제의 직무였다. 반면에 병조는 군정을 총괄하는 처지에 서서 모든 移命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관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은 컸고 군 령상의 지위도 무시할 수 없었다. 즉 5위에 대한 군령권은 오위도총부에 있었지만 병조는 군정상 5위를 속아문으로 거느리며 오위도총부와는 횡적인 협조관계에 있었다.90)

2) 군정기관의 정비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조선이 건국되면서 관제개혁을 단행하였을 당시에 있어서의 군정기관으로서 병조가 담당하는 것은 武選·兵籍·郵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91) 그러나건국 초기에는 고려 이래의 都評議使司의 권한이 컸고 문무관의 인사권은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尚瑞司에 있었으며 이는 권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태조 2년(1393)에 최고의 군령기관으로 만들어진 의흥삼군부가 군정을 포함하는 군무 전반에 걸쳐 방대한 기능을 갖는 중추적 관서로 되자 상대적으로 병조의 군정상의 지위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태조로부터 태종 초에 이르기까지 병조가 관여하고 있었던 군정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에 불과하였다.

첫째, 무관의 인사관계에 병조는 소극적으로 간여하였다. 즉 태조 4년에 10사의 장군과 5員・10將에 대한 자격심사나 충당에 의흥삼군부와 함께 참여하도록 조치되고 있는 것이다.92) 그러나 의흥삼군부와 함께 간여하는 경우주도권은 병조가 아니라 의흥삼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사실상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조와 더불어 고려 초의「政案之法」을 시행하도록 요청한 일도 있었지마는 상서사에 의한 인사행정이 행해진 상황에 변혁을 가져올

⁹⁰⁾ 閔賢九, 앞의 책, 287~288쪽.

^{91)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92) 《}太祖實錄》 권 7, 태조 4년 2월 병인.

수는 없었다.

둘째, 병조는 무과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국 직후에 공포된「入官補吏之法」에서 무과는 병조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과 출신과는 訓練觀에 보내어 병서 및 무예를 시험하고 3등으로 구분하여 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과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그리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93)

병조가 이와 같이 군정상 주요한 위치에 서지 못했던 점은 사병이 혁파되지 않아서 그 지휘계통이 사적 영속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병조의 관장사항 가운데 하나인 군적 관리도 각 장수가 소관 군사의 군적을 장악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건국 초기의 병조의 군정기능은 거의 유명 무실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군사정책은 거의 모두가 의홍삼군부에 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태조 2년 5월 의홍삼군부가 설치되고 곧 정도전이 판사로 취임한 이후, 10위의 개칭과 3군 분속 등 대개혁을 제시한 태조 3년 2월 상소를 비롯한 많은 개혁안이 의홍삼군부 또는 判義與三軍府事 정도전의 명의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의사항은 채택되고 있다.94) 그러므로 당시의 의홍삼군부는 최고의 군령기관인 동시에 최고의 군사정책기관의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흥삼군부는 무관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도 관장하였다. 태조 6년 정월에 설치된 의흥삼군부 舍人所는 고대의 제도를 본받아 의관 자제들의 무예를 교습시킨다는 곳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활동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건국 초의 侍衛牌는 사적 영속관계에 놓여 있었고 그 군적은 절제사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인 파악은 역시 의총삼군부의 소관이었던 것 같다.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최고의 기관이었고 군적의 관리에 관여하며 무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의흥삼군부는 강력한 군정상의

^{93) 《}太祖實錄》 권 11, 태조 6년 5월 임자.

^{94) 《}太祖實錄》 권 5, 태조 3년 2월 을해.

최고기관이었고, 문서상의 군정기능을 가지고 있던 병조는 사병혁파 이전까지는 그 기능이 거의 허구에 가까웠던 것이다. 군정기관이 정비되지 않은 건국 초기에는 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서로서 병조·의흥삼군부 이외에도 중추원과 훈련관·군자시 등이 있었다.

중추원은 고려시대의 것을 제도상 그대로 이어 받은 것으로 주로 군기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사관계는 의흥삼군부의 존재 때 문에 허구화되고 왕명출납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무예훈련과 兵書·戰陣의 교습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훈련관은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태조 3년 정월에는 中軍軍候所를 흡수하여 훈련과 교습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하였다.95) 특히 전법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훈련관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무과의 주관이다. 태조 4년 4월에 최초의 무과 都試를 통해 33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는 훈련관에서 맡았던 것으로 여겨진다.96) 훈련관은 使(정3품)를 장관으로 하고 관원 약간명을 갖고 있었는데 겸관들로서 채워졌던 것 같다.

이 밖에 병기를 취급하는 군기감이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또 군 자감은 軍旅糧餉을 맡은 군수지원 관서였다.97) 이들 두 기관은 判事(정3품)를 장관으로 하고 있었다. 또 사복시도 있어서 與馬・廐牧을 맡았던 것인데 이 것도 역시 군정부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태종 5년(1405) 정월 병조권이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전기한 바와 같이 군 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위치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병조는 승추부(의흥삼군부의 후신)를 흡수하여 정2품 아문으로 되며 무관의 인사권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 데다가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골격을 뚜렷하게 해 준 것은 같은 해 3월에 처해진 6조의 분직 및 소속 관아의 詳定 조치였다.

^{95) 《}太祖實錄》 권 5, 태조 3년 정월 임자.

^{96)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 권 7, 태조 4년 4월 신묘.

^{97) 《}太祖實錄》 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이 때에 병조의 업무가 다시 규정되었으며 또 이를 분담하는 3개의 司와 그 소관 업무가 정해졌고 군사관계의 여러 관서는 병조의 속아문으로 귀속되 었다.98)

이 때에 규정된 병조의 소관사항은 武選・府衛・調遣・職方・兵甲・出征・告捷・講武로 나타나고 있다. 무관에 대한 인사행정, 군사의 調發 및 전쟁사태에의 대처 및 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관사항은 다시 武選司・乘興司・武備司의 3개 예하 사에 의해 분장되었다. 그리고 중・좌・우의 3군을 비롯하여 훈련관・사복시・군기감 등 군정관계 관서들은 병조 소속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위치를 확립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강력한 단일적인 군령기관으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갖추게 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경국대전》에 규정화될 때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개의 사를 갖는 병조의 핵심 관원은 判書(정2품)·參翔(종2품)·參議 및 參知(정3품) 등 4인의 당상관과 正郎(정5품)·佐郎(정6품)이 각 4인씩 있었다.⁹⁹⁾ 6조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참지는 知兵曹事가 개칭된 것으로서 병조의 과다한 업무에 비추어 다른 曹와는 달리 추가 배치된 인원이다. 물론 병조의 모든 관원은 거의 문신으로 임명되었다.

건국 초기 병조의 관직으로 주목되는 것은 判事와 兼判書의 존재이다. 6 조가 정2품 아문으로 승격되고 이・병조가 문・무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자 정승으로 하여금 判吏・兵曹事를 겸섭시켜서 주로 인사관계를 장악하 도록 했다. 뒤에 이러한 제도가 철폐되고 판서가 명실공히 장관으로서 기능 을 발휘하게 되지만 때때로 군정과 군령에 걸친 방대한 권한에 비추어 의정 부의 고관을 판병조사 또는 겸병조판서로 임명하여 진용을 강화시키는 예가 많다.100)

병조의 관아는 司憲府의 남쪽에 있었지만 궁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창덕궁 금호문 밖에 內兵曹를 두어 분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다.

^{98) 《}太宗實錄》권 9, 태종 5년 3월 병신.

^{99)《}經國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六曹.

^{100)《}增補文獻備考》 권 218, 職官考 5, 兵曹.

내병조는 주로 군령체계상 궁내에서 시위를 주관하고 儀仗에 대하여 관할 했는데 관원은 정해진 인원 가운데 일부가 내병조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01]

《경국대전》가운데 정비된 병조의 소관 업무는 예하의 무선·승여·무비등 3사가 분담하도록 했는데 그 대강인「武選·軍務・儀衛・郵驛・兵甲・器仗・門戶・管鑰之政」을 세분화하여 분담하도록 했다.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102)

武選司:武官・軍士・雜職의 除授・告身・祿牌・附過・給暇 및 武科 등에 대한 사무.

乗興司: 鹵薄・興輦・廐牧・程驛・補充隊・皀隷・羅將・伴倘 등에 대한 사무. 武備司: 軍籍・馬籍・兵器・戰艦・點閱軍士・訓鍊武藝・宿衛・巡綽・城堡・ 鎭戍・備禦와 征討, 군관・군인의 과견・番休・給保・給暇・侍丁・ 復戶 및 火炮・烽燧・改火・禁火・符信・更籤 등에 대한 사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조의 무선사는 인사관계의 여러 업무를 분장하였다. 무관과 군사의 임면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대업무로서 告身·祿牌 등에 대하여 책임을 맡았으며 서반 소속의 잡직 제수도 무선사에서 관장하였다. 무과도 여기서 주관하였다. 무과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式年試(정기시)였지만 이러한 정규의 무과 이외에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增廣試 등이 개설되곤하였다. 한편「取才」라 하여 각 병종별로 필요한 요원을 시취로 충당하기도 했다.

승여사는 왕의 행차와 수레 및 廐牧 등에 관한 의장 사항을 비롯하여 보충대·조예·나장·반당 등 儀衛와 관계되는 특수한 병종이나 胥吏에 대한 사항을 책임맡았다.103) 특히 승여사에 있어서, 교통관계인 정역에 대한 관장은 주목된다. 그러나 대체로 군사에 직접 관계있는 사항보다는 왕 및 관료의의위에 대한 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 승여사였다.

끝으로 무비사는 병조가 장악하는 군무 가운데 무선사가 책임 맡은 인사

¹⁰¹⁾ 閔賢九, 앞의 책, 296쪽.

^{102)《}經國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六曹.

^{103) 《}經國大典》 권 4, 兵典.

관계 업무와 승여사가 책임 맡은 의위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다. 즉 군적・병기・훈련・진지구축・병력조정・봉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군정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군적의 장악은 매우 큰 업무였다. 각 지방의 鎭管(행정구역상의 邑)에서 파악하여 작성된 군적을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병조에 비치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전국적인 군역 부담자의 파악과 가용병력의 행정상 장악은 무비사를통해 병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무예의 훈련, 숙위와 순작, 진지구축등도 모두 무비사에서 계획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그 밖에 방위업무나전투의 수행도 실제로 무비사 관장사항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국방관계의 거의 모두를 무비사에 의해 분장 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병조에는 속아문으로 五衛·訓鍊院·司僕寺·軍器寺·典設司·世子 翊衛司가 있다.104) 이 가운데 5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는데 그 자체가 부대와도 같은 것으로 오히려 병조의 군정상 지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세자익위사의 경우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 훈련원을 비롯한 관서는 대체로 병조의 군정기능을 보좌하고 분담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므로 군정기관의 중추적 존재인 병조와 더불어 이들을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군정관계는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원이었다. 이미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적된 훈련관이 훈련원으로 개칭된 것으로 기능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 직능은 「軍士試才・鍊藝・武經習讀之事」였다. 특히무과의 경우 중앙에서는 훈련원이 장악하고 복시를 치를 때에도 병조와 더불어 주관하였다. 취재와 연무의 경우에도 훈련원이 주장하고 있어 군정상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복시는 초기와 마찬가지로 興馬·廐牧을 장악하는 마정기관이었다.105) 전쟁관계 또는 교통통신 등을 살필 때에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였으 므로 사복시의 임무도 군정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 사복시는 병조의 승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¹⁰⁴⁾ 위와 같음.

¹⁰⁵⁾ 南都泳、〈朝鮮牧子考〉(《東國史學》8, 1965).

(표 5) 병조 및 병조속아문 기능·조직 일람표

各	衙	門	所 掌	所屬官員						
			掌武選・軍務・	判書 1원(정2품) 參判 1원(종2품) 參議・參知 각						
=		TH:	儀衛・郵驛・兵	1원(정3품) 正郎 4원(정5품) 佐郎 4원(정6품)						
兵		曹	甲・器仗・管鑰							
			之政							
				將 12원(종2품) 上護軍 9원(정3품) 大護軍 14원						
				(종3품) 護軍 12원(정4품) 副護軍 54원(종4품)						
				司直 14원(정5품) 副司直 123원(종5품) 司果 15						
Ŧī.		衛		원(정6품) 副司果 17원(종6품) 部將 25원(종6품)						
				司正 5원(정7품) 副司正 309원(종7품) 司猛 16원						
				(정8품) 副司猛 483원(종8품) 司勇 42원(정9품)						
				副司勇 1,939원(종9품)						
			掌軍士試才・錬	知事 1원(종1품) 都正 2원(정3품, 1원 兼) 正 1						
±1π	结	10-1-7	藝・武經習讀之	원(정3품) 副正 2원(종3품) 僉正 2원(종4품) 判						
訓	練	院	事	官 2원(종5품) 主簿 2원(종6품) 參軍 2원(정7품)						
				奉事 2원(종8품) 習讀官 30원						
			掌輿馬・廐牧	提調 2원(종1품~종2품) 正1원(정3품) 副正 1원						
司	僕	寺		(종3품) 僉正 1원(종4품) 判官 1원(종5품) 主簿						
"	大	71		2원(종6품) 安驥 1원(종6품잡) 調驥 1원(종7품						
				잡) 理驥 1원(종8품잡) 保驥 1원(종9품잡)						
				都提調 1원(정1품) 提調 2원(종1품~종2품) 正1						
				원(정3품) 副正 1원(종3품) 僉正 1원(종4품) 別						
		寺		坐(정5품) 判官 2원(종5품) 別坐(종5품) 別提(정						
軍	器		掌造兵器	6품) 注簿 2원(종6품) 別提(종6품) 直長 1원(종7						
					품) 工製 5원(종7품잡) 奉事 1원(종8품) 工造 2					
					원(종8품잡) 副奉事 1원(정9품) 參奉 1원(종9품)					
				工作 2원(종9품잡)						
典	設	司	堂供帳幕	守 1원(정4품) 提檢 2원(정종 4품) 別坐 2원(정						
			2 10 110 111	종 5품) 別提正 2원(종6품)						
111	世子	_	掌陪衛東宮	左・右翊衛 각 1원(정5품) 左右司禦 각 1원(종5						
		•		帝) 左右翊贊 각 1원(정6帝) 左右衛率 각 1원(종						
翊	衛	司		6품) 左右副率 각 1원(정7품) 左右侍直 각 1원						
				(정8품) 左右洗馬 각 1원(정9품)						

군기시는 국초의 군기감이 개칭된 관서로 병기의 제조를 전담하였다. 특히 태종 이후 당시의 주요 병기였던 화약병기의 제조와 개량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사복시와 군기시에는 장관인 正(정3품)이 1원씩 있었지만 고관이 겸임하는 都提調 또는 提調가 있어서 소속 관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밖에 帳幕을 供設하도록 되어 있는 전설사가 있었으나 이는 국초의 司幕이 忠順扈衛司·忠扈衛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일종의하급 의위기관으로 비정할 수 있다. 세자익위사는 세자를 배위하는 임무를 갖는 것이므로 군정과는 직접 관계되지 않는 관서였다.

병조의 속아문 가운데 훈련원은 중요한 군정의 위치에 있었다. 사복시와 군기시도 독특한 임무를 관장하고 있었지만 군정 기능상 크게 중시된 것은 아닌 것같다. 따라서 군정기관으로서의 병조의 위치는 확고하여 방대한 군사관계 업무는 거의 도맡아 처리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병조와 그 속아문의 기능과 군직을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표로 만들면 앞의〈표 5〉와 같다.106)

5. 군비의 확충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1) 화기 제조의 발달

고려 말의 공민왕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던 화약은 공민왕 말기에 이르면 화약병가의 제조는 물론, 焰縮・硫黃 등의 원료를 공급받아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崔茂宣에 의하여 火焔都監이 설치되었다.107) 이 화통도감의 설치로 화약을 원료로 하는 大將軍砲・二將軍砲 등 거

¹⁰⁶⁾ 이 표는 閔賢九, 앞의 책, 300쪽에서 옮김.

^{107)《}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火埇都監.

의 20종에 달하는 화기가 제조되어 여말 왜구를 격퇴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의 신흥세력인 이성계 일파가 사실상 집권층에 뛰어들었던 창왕 원년(1389)에 趙浚의 상소에 의하여 화통도감이 폐지되었다.108) 이는 한마디로 당시 정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던 이성계 일파로서는 고도의 성능을 가진 화기의 발달은 언제 갑자기 자파세력을 뒤엎을지 모르는 결정적 요소로서 경계와 억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09) 따라서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한 뒤에도 화기제조 정책에는 소극적인 면을 보였다.

그러나 비상수단에 의하여 왕권을 장악했던 태종대에 이르면 화기제조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즉 태종 원년(1401) 유3월에 최무선의 아들 崔海 山을 등용하여 화기제조를 본격화하였다.110) 최해산은 權折의 건의에 의하여 군기주부로 발탁되어 태종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아버지 무선이 전해준 비법 을 중심으로 연구에 전심하였다. 이러한 최해산 등의 노력으로 화약의 성능 이 더욱 향상되고 연구의 진전에 따라 태종 4년에는 군기감별군이 편성되고 화통군이 증원되었다. 태종 7년에는 화약의 성능이 두 배로 증가하였고 火藥 匠 33명이 군기감에서 화약의 제조를 계속함 정도로 발전하였다. 태종 9년 정월에는 화차가 李韜·崔海山 등에 의하여 제작되었는데 그것은 鐵翎箭 수 십 개씩을 장탄한 銅角 등촐 수레에 싣고 달리면서 화약으로서 발사하는 것 이었다.111) 이렇게 화기와 화약제조가 활발해지자 그 해에 紫霞門 안에 무기 고를 신축하고 이어 軍器別監・本監이 지어졌으며, 태종 17년에는 火藥監造 廳이 낙성되었다. 이와 같이 화기의 발달은 태종 10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사 이에는 화기의 제조와 그 발사시험이 거의 매년 거듭되어 드디어 화포를 종 래의 방어용 및 해전용 화기에서 성을 공격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시켰다.112) 그 사이에 군기감에서 제조된 화통은 1만 자루가 넘었으며 그것들은 100여 개소의 성과 160여 척의 병선에 배치되었다.113)

^{108) 《}高麗史》 권 118, 列傳 31, 趙浚.

¹⁰⁹⁾ 許善道、《韓國火器發達史》 상 (陸軍士官學校 軍事博物館, 1969).

^{110) 《}太宗實錄》권 1. 태종 원년 윤3월 경인.

^{111) 《}太宗實錄》권 18, 태종 9년 10월 병진.

¹¹²⁾ 許善道, 앞의 책.

^{113) 《}太宗實錄》권 30, 태종 15년 7월 신해.

뿐만 아니라 태종 13년(1413) 경에는 크기가 다른 세 가지의 碗口 20門이만들어졌다. 그것은 돌로 만든 탄환을 발사하는 것으로 명나라 초에 만들어진 盞口砲를 본때서 만든 화포였다. 이 때에 만들어진 완구는 사정거리 150보에 달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震天雷가 사용됨으로써 攻城用으로 제일 좋은 화기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태종대는 최해산의 중용, 藥匠에 대한 賞賜, 火漏試放의 성행 등 왕의 적극적인 권장과 그 뜻을 받들어 父傳의 비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해산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로로 화기 발달에 의의가 큰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의 화기는 거대하고 육중하여 사용에 극히 불편하면서도 화약의 소비량이 컸고, 당시 명에서 성행하였던 一發多箭法은 끝내 터득하지 못하였다. 태종 당시에 사용된 화기의 구체적인 이름으로는 火煸, 火車, 火砲, 碗口(大・中・小), 蒺藜砲, 地・玄字砲 등을 들 수 있다. 발사물로는 鐵翎箭과 아울러 탄환류(石彈子)의 출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사정거리는 2~30보 내지 500보 정도이고 주조재료는 오로지 동・철이었던 것 같다.114)

화포의 주조기술과 화약의 제조기술이 향상되면서 세종 때에 이르러서는 중국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려는 독자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세종이 즉위하면서는 염초생산의 확대와 화약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와 세종 5년(1423) 경부터는 염초생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115) 특히 염초토는염초 煮取에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화약제조에 필요한 유황과 목탄 등과 함께 3대 요소인 것이다.

염초제조는 전국 각 도에 할당하는 常貢으로 되었지마는 염초의 공납으로 화약제조의 비법이 보급되면 왜인에게 전습될까 우려하여 국가에서 철저히 규제하기로 하였다. 염초제조의 활성화는 그만큼 화기기술의 개량발달을 가져왔다. 화포 개량의 노력은 새로운 발명을 가져오게 했다. 세종 초기부터 완구의 개략, 화통 이름의 변경, 發火의 출현, 信砲의 사용, 소화포의 출현 및 鐵彈子의 사용 등이 나타난다.116)

¹¹⁴⁾ 許善道, 앞의 책.

^{115) 《}世宗實錄》 권 19, 세종 5년 정월 신묘.

^{116) 《}世宗實錄》 권 27, 세종 7년 정월 계사.

그리하여 세종 12년 6월에는 火砲放射軍 즉 포병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였고, 그 제도는 더욱 발전하여 세종 16년 정월에는 화포 준비인과 발사인을 구별하여 목표물에 따라 화포의 방향각을 조절할 줄 아는 훈련된 병사가 배치되어 포병과 같은 새로운 병종이 창설되었다.117) 그와 함께 지상 전투에서는 수성에만 쓰이던 화포를 말에 싣고 포병은 말을 타고 행진하다가 공격지점에 오면 말에서 내려 화포를 발사함으로써 공격용 화기로서의 사용이 시도되었다. 또 전국 해안에 포대를 증축하여 화포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해안 포로서의 사용도 이루어졌다.

세종 14년부터 이듬해까지 태종 이래의 숙원이었던 한 발에 화살을 많이 쏠 수 있는 일발다전법인 火砲箭이 발명되었다. 이 화포전은 雙箭火砲라 하여 1차 야인정벌에 쓰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발다전법은 掃火矢라 하여 일본에 전해지기도 했다.¹¹⁸⁾

세종 23년(1441) 10월에는 火鞘가 발명되었다. 그것은 길이 4~5척의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金鏃小走火를 넣고 헝겊으로 만든 도화선을 써서 불을 붙여 두었다가 던지는 일종의 수류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발전적기운에도 불구하고 화포 제조기술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였다.

세종은 그것의 기술향상을 위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종 26년 가을에는 冶所, 즉 화포주조소를 행궁 옆에 짓게 하고 자신의 직접 지휘 아래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는 시험제작을 거쳐 새로운 규격의 화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발사시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한 발에 여러 화살을 쏘아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天字 화포는 화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1,000보나 나갈 정도가 되었다. 이듬해 8월에는 화포를 전면적으로 다시 주조하는 일에 착수하였으며 종래의 화포는 모두 폐기되고 개량된 새 형식의 화포가 만들어졌다. 세종 30년 9월에 편찬 간행된《銃筒謄錄》은 그 화포들의 조작법과 화약사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확한 그림

^{117) 《}世宗實錄》 권 46, 세종 11년 11월 경신·권 47, 세종 12년 6월 임진·권 59, 세종 15년 정월 경오.

¹¹⁸⁾ 有馬成甫、《火砲の起源とその傳統》(吉川弘文館、東京、1962)、293쪽、

으로 표시한 책이었다.119)

《총통등록》의 간행은 조선 화포제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종 래 중국식 화기의 모방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조선 특유의 형식과 규격을 갖춘 독자적 발전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귀중한 업적인 《총통등록》은 국가의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들이 대대로 강구되는 사이에 전해지지 않고, 성종 5년(1474)에 편찬된《國朝五禮儀序例》의〈兵器圖說〉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이《총통등록》은 세조 12년(1466) 11월에는 한글판《총통등록》에 나와 일반 병졸들도 능히 숙달하게 되기도 했다.120)

세종은 화기의 독자적 제조 개발에 힘썼을 뿐 아니라 염초자취와 방사군의 강화를 위하여 司務局을 궁중에 설치하고 화약생산의 증가와 그 비밀보장을 꾀하였고 한편으로 銃筒衛를 설치하여 방사군의 대량 확보와 그 질적 향상 을 위하여 총통군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세종의 화포에 대한 노력은 문종에 의하여 계승 추진되었다. 문종 원년 (1451) 정월에 화차전을 쏘았고 2월에는 화차의 제조를 완성하였다.121) 이 제도는 태종 때의 화차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제도는 車子(수례) 위에 架子를 만들어 싣고 그 안에 中神機箭 100개 혹은 4箭銃筒 50개를 꽃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차례로 발사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로켓과 같은 구조였다.122) 화차 창제에 성공한 문종은 우선 경중에 50량, 의주 등 양계 4읍에 각 20량씩 모두 130량을 제조 비치토록 하여 이후 제조와 보급에 크게 주력하였다. 또 將軍火砲 및 銃筒線穴의 확대 등도 모색하는 동시에 일반 군기를 고치고 보충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그러나 문종 이후에는 화기에 대한 연구나 이용이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고, 중종과 명종대에는 天·地·玄·黄의 중화기와 선조 초에 소형화기인 勝字銃筒의 제조가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¹¹⁹⁾ 許善道, 앞의 책,

[《]世宗實錄》권 121. 세종 30년 9월 병신.

^{120) 《}世宗實錄》 권 133, 五禮 軍禮序例兵器.

^{121) 《}文宗實錄》 권 1, 문종 원년 정월 · 2월.

¹²²⁾ 許善道、〈麗末鮮初 火器傳來와 發達(하)〉(《歷史學報》26, 1965).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조선 초기의 기록에 나타나는 화기의 종류는 대개《세종실록》에 나오는 銃筒圖인《국조오례의서례》의〈병기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123)

병기도설에 기록된 총통은 銃筒碗口·將軍火筒·一銃筒·二銃筒·三銃筒·四箭銃筒·四箭長銃筒·八箭銃筒·細銃筒·鐵信砲·新製銃筒 등 11종인데 이 가운데 신제총통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종은 모두 세종 때 제작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병장도설〉에 기록된 각종 화기 가운데 문종 11년에 창안한 화차와 세조 13년(1467)에 처음 만들어진 신제총통을 제외한 나머지 화기, 즉 총통완구, 장군화통, 1총통, 2총통, 3총통, 4전총통, 4전장총통, 8전총통, 세총통, 철신포, 大箭, 次大箭, 中箭, 次中筒小箭, 次小箭, 細箭, 次細箭, 無長箭, 次細長箭, 大・中・小蒺藜砲, 大・中・小散火筒, 大・中・小神箭, 大・中・小發火, 地火 등 34종은 전기한 세종 30년(1448) 9월에 편찬된《총통등록》의 기록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 말 이전의 총통에 대하여 그 종류나 크기·구조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세종 말에 새로이 연구된 총통완구를 비롯하여 10가지의 총통과 세조 때에 제조된 신제총통에 대하여 병기도설에 기록되어 있어 그 크기와 구조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규모는 다음 〈표 6〉과 같다.124)

세종 27년에 이룩된 총통 대개혁의 특징은 첫째 箭의 사정거리가 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과 한번에 여러 발의 전을 발사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총통의 성능을 전보다 훨씬 높인 것이다. 위의 두 가지 특징 즉 성능을 높여 주기 위하여 총통의 내부구조를 개량시켜야 했다.

세종 27년 이전 조선 총통의 내부구조는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총통으로 추정되며 늦어도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듯싶은 慶熙古小銃筒이나 세계 최고의 총통 중의 하나인 스웨덴의 Loshult소총통과 같이 총의 觜口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지다가 화약이 폭발하는 곳인 약통에서는 다

^{123) 「}銃筒圖」는 《世宗實錄》권 133, 五禮軍禮序例 兵器條에 수록된 것이던 《國朝 五禮儀》는 세조대에 姜希孟의 손을 거쳐 성종 5년에 申叔舟 등에 의하여 완 성되었다.

¹²⁴⁾ 蔡連錫,《韓國初期火器研究》(一志社, 1981).

〈丑 6〉

〈兵器圖說〉의 發射器 규모

단위: mm

	銃 筒 名	重量	共長	觜		激木	薬筒	冒柄長	發射物
		里 里	六区	內徑	長	筒長	長	및 足 高	592 201 170
	銃筒碗口	203근	618	339.0	237.1	107.2	268.5	5.2	石丸(1)
대	將軍火筒	104근 10량	895.1	100.9	531.1	117.8	246.2		大箭(1)
형	一銃筒	41근 8량	747.6	67.2	538.6	100.9	86.2	21.9	次大箭(1) 中 箭(1)
	鐵信砲	76근 4량	408.6	100.9	105.3	130.6	172.7		
	二銃筒	3근 8량	449.9	26.2	257.1	27.5	95.6	69.7	小箭(1) 細 長 箭 次細長箭
소	三銃筒	1근 3량	331.8	16.6	148.4	21.2	85.3	76.9	次中箭(1)
	四箭銃筒	1근 6량	263	21.9	122.1	23.1	48.4	69.4	細 箭(4) 次細箭(6)
	四箭長銃 筒	2근 10량	430.5	24.1	255.9	23.1	81.2	70.3	次 小 箭(1) 細 長 箭(4) 次細長箭(6)
형	八箭銃筒	2근 3량	313.3	29.4	161.5	33.7	46.2	71.9	細 箭(8) 次細箭(12)
	新製銃筒	10량	196.7	13.4	87.5	15.6	46.9	46.9	新製銃筒箭(1)
	細銃筒	3량 5전	140.0	8.4	80	10.0	46.9	3.1	次細箭(1)

시 넓어지는 無激木形銃筒의 내부구조와 같은 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무격목형총통에 대하여 세종 때에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총통의 약통 앞 부분에 激木을 끼울 수 있는 격목통을 만들고 그 앞 부분에 전을 끼우는 觜가 있도록 한 격목형총통의 내부구조를 바꾸었다. 격목형총통의 내부구조를 갖춘 총통은 약통에서 화약이 폭발할 경우, 높은 압력이 될 때까지는 연소가스가 새지 못하다가 갑자기 높은 압력에서 격목이 격목통에서 뛰쳐 나가며 觜에 있는 전들을 발사시킴으로써, 격목형총통은 무격목형총통보다 적은 화약으로 여러 발의 전(화살)을 더 멀리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총통의 뒷 부분에 있는 目柄에는 길이 700~800mm의 둥근 나무 (柄木)를 박아 유럽에서와 같이 손잡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격목형의 총통은 1579년 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승자총통에서 土隔形의 내부구조로 바뀐다. 토격형총통의 내부구조는 觜의 내경과 약통의 내정이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

발사물은 전 대신에 丸을 사용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의 〈병기도설〉에 따르면 각종 총통에서 사용한 발사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丸:石丸(銃筒碗口用) 箭 — 木箭 — 鐵翎-大箭, 次大箭 — 皮翎-中箭, 次中箭, 小箭, 次小箭, 新製銃筒箭 — 竹箭 — 羽翼-細箭, 次細箭, 細長箭, 次細長箭

또한 각 전의 규모는 다음 〈표 7〉과 같다.125)

〈표 7〉 각종 箭

단위 : mm

		부분 명칭		領			鏃		翎			
箭의 종류			15 9.9		長	上下 兩圍	中圍	鏃長	根	長	後長	材料
+	大			部	179.3	9.4	9.8	11.1	14.1	43.7	52.6	皮
大:	次	大		<u>タケ.</u> 同じ	159.7	5.9	6.5	8.4	12.5	35.2	54.3	"
中	中			空左 同日	73.0	4.1	4.1	5.6	8.4	31.8	-	"
小	次	中	ı	部	47.1	1.5	1.7	3.0	6.2	10.3	14.7	"
小箭(木)	小			部	25	1.7	1.7	3.4	4.1	12.5	-	"
	次	小	`	<u>全</u> 年 同订	25	1.4	1.4	3.4	3.4	12.5	-	"
	新	製 鈁	笥	宮町	16.9	1.3	1.3	3.12	5	9.4	-	"
細箭(竹)	細	長		<u> </u>	25.9	0.8	0.8	2.8	4.1	5.0	-	<i>3</i> 7
	次	細	長	宮町	25.9	0.8	0.8	2.8	4.1	8.1	-	"
	細			宮町	19.7	0.8	0.8	2.2	4.1	6.6	-	"
	次	紐		空生 門	19.7	0.8	0.8	2.2	4.1	6.6	-	"

조선 초기의 화기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것으로는 문종에 의하여 직접 창안된 火車이다. 이 화차는 수레 위에 四箭銃筒 50개를 설치한 銃筒機와 中小神機箭 1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神機箭機 가운데 한 개를 올려 놓고 사용한 것이다. 신기전은 한국의 로켓형 화기로 고려 말 최무선에 의해 제조된 「달리는 불」즉 走火로 이러한 로켓형 화기는 세계 4위에 해당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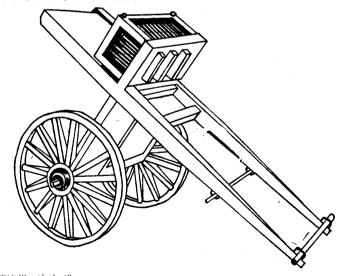
¹²⁵⁾ 蔡連錫, 위의 책, 181쪽.

주화는 세종 29년(1447)에는 두 달에 3만 개 이상이 사용될 정도로 화기로서의 비중이 컸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주화의 이름을 신기전으로 바꾸어 계속 사용하였고, 그 종류로는 大・散火・中・小神機箭이 있다.

이와 같은 신기전을 발사할 때 사정거리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수데의 바퀴 축대에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차체를 올려 놓음으로써 신기전의발사 각도를 최대 43도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4전총통기나 신기전발사틀은 모두 藥線을 차례로 연결하여 동시에 연발로 발사하였던 것으로특히 연발 이동식 로켓발사대인 신기전기를 부착한 화차는 당시 외국의 어떤 로켓 발사대보다도 정밀하고 과학적이었다.[26]

이 외에 폭탄으로 發火筒과 蒺藜砲筒이 있었다. 발화통은 종이로 만든 통속에 화약을 넣은 것으로 종류에는 대·중·소 및 대신기 발화통이 있다. 질려포통은 나무로 둥글게 깎고 속을 비워 그 속에 화약·철파편·쑥잎 등을넣어 적의 배에 던지거나 산 위에서 굴려서 사용하였으며 그 종류에는 대·중·소질려포가 있다.127)

¹²⁶⁾ 蔡連錫이 실제 火車를 만들어 神機箭을 실험 발사한 일이 있다. 이 그림은 그 때의 총통이 장치된 화차이다.



127) 蔡連錫, 앞의 책.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국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조직의 강화 및 활용에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고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軍糧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왕조에서도 과전법을 제정하면서 軍資位田을 책정하였다. 즉 고려 말 공양왕 2년(1390)에 발족한 軍資寺를 중심으로 각 도에서 새로 개간한 토지를 비롯하여 양전이 불가능한 바닷가와 섬의 토지 및 측량의착오로 잉여되는 토지 등을 이에 충당하게 하여 그 田租를 경중과 각지에 저축하게 하였다.

그래서 군자위전은 태조 7년(1398)에 약 10만 결이었다. 물론 과전법의 실시는 당시 신흥세력이었던 이성계 일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토지 국유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여 과전법의 실시는 기본적인 군량미 확보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전법의 공포로 군량 확보의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군량미의 축적 이 필요했고, 둘째 군자전에서 소출되는 전세는 비교적 일정한데 태종 이후 군자를 포함한 국가재정은 팽창일로에 있었으며, 셋째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군수 부족은 그 때마다 보충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28)

따라서 군수증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은 군수미가, 첫째 軍資田稅에서 비롯되므로 군자전세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를테면 양전을 철저히 시행한다거나 개간을 장려하여 군자전의 항목을 확대하는 조처가 태조이래 추진되었다. 둘째 세종 이후 하삼도에서부터 새로운 세법인 貢法을 시행하여 군수를 비롯하여 모든 수세액을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셋째

¹²⁸⁾ 金鎔坤、〈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韓國史論》7, 국사편찬위원회, 1980). 조선 초기의 군량미에 관해서는 위의 글이 있을 뿐,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글도 위의 글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다만 필자 나름대로 장・절을 바꾸어 요약・서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屯田을 세종 이후 재차 시행함으로써 각 지역의 군수미 부족분을 해결하고 있다. 조선왕조의 군량미 확보는 이원적 과정을 통하여 달성되었다. 즉 국방상의 특수지역인 양계(함경·평안도)는 수세액 모두가 군자로 충당되는데 반해 일반 주현, 즉 6도의 전세는 중앙의 재정으로 쓰여지는 상납 전세와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州倉 소속의 전세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전국의 전결을 이야기할 때는 양계를 제외한 6도 전결을 말하는 경우를 볼 수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각 도의 군량미라고 하면 양계를 제외한 6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각 도의 군자전세의 일부는 조운을 통하여 중앙에 상납되고 나머지는 주 창에 비축하였으며 주창에 소속된 군자미는 그 지역의 군수에 쓰여졌으며 둔전 소출도 역시 군자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각 주현에서는 군자곡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때 가능하면 군수의 명목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다. 한 예를 들어보면 성종 2년(1471) 전세 상납 때에 船價·入京倉價·入江倉價 등의 비용이 주창에서 나와 京倉으로 들어가 주창이 허갈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주창에 납부하여 군수에 충당하도록 조처하고 있는 것 등을 볼 수 있다.129)

그러나 지방의 군자도 비축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했지만 지방의 군자곡도 세종 이후 특히 義倉穀과 더불어 還上穀으로 사용되거나 각 지역에서 흉년으로 발생한 飢民賑貸를 위하여 이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농사철에 종자곡으로 전용되거나 보충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세종 19년(1437) 6월에는 전년도에 충청도에서 발생했던 흉년으로그 해의 종자곡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의창곡 105,715석과 군자곡 89,501석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0)

뿐만 아니라 당해 주현의 군자전세를 상납하도록 되어 있던 지역도 그 지역의 군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防戍 등으로 새로이 군수가 필요한 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창으로 돌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세종 30년 12월에 있었던 거제현의 상납 전세미가 군사적인 이유로 주창으로 납부되던

^{129) 《}成宗實錄》권 9, 성종 2년 2월 계유.

^{130) 《}世宗實錄》 권 77, 세종 19년 6월 경신.

일 따위다.131)

특히 경상도지역은 양계의 여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과의 사신왕래라 던가 또는 왜구가 잦았던 관계로 이 지역에 대한 군수 논의는 비교적 빈번 하였다.

성종 5년 10월에는 원래 경상도 전세는 접대비용에 충당하고자 상납곡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해 제읍의 창고가 허갈하다 하여 수년을 한도로 상납 전세를 주창에 수납하여 倭料를 보충하고 군수에 충당토록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 대한 군수부족이 여전하여 성종 8년 2월에는 경상도 군수보충 논의가 크게 제기되기도 하였다.132)

이 때에 제기된 논의를 간추려 보면 상납전세를 주창에 납부하고 상납곡은 전라·충청도의 군수로 충당할 것, 100만여 석이 넘는 군수미나 둔전에서 나오는 것과 감사·수령이 별도 저축한 수량도 수천 석으로 저축이 넉넉하니 전라·충청의 상납곡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防倭를 위한 방어지역으로서 경상도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각 주창에 모아둔 군자곡이 얼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양계로 표현되는 함경도와 평안도는 전기한 바와 같이 국가의 방수지역인 동시에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국방과 군량 비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소용되는 군량은 일단 이 지역에서 거둔 전세와 각 지역에 설치된 둔전의 수확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방수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평상시에도 군수라는 항목으로 비축되었기 때문에 흉년이나 기타 유사시에는 軍餉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게 되었다.133)

따라서 이 지역의 비축곡이 적을 때에는 어느 곳보다도 먼저 군량비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종대에는 동북면의 所儲雜穀이 부족하

^{131) 《}世宗實錄》권 122, 세종 30년 12월 갑술.

^{132) 《}成宗實錄》 권 7, 성종 8년 윤2월 을유.

¹³³⁾ 金鎔坤, 앞의 글, 287쪽.

다고 하여 강원도 군량을 이곳으로 수송하려고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태종 16년(1416)에는 동남면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開城留後司의 陳穀을 조 운하는 등의 조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종대에는 4군・6진이 개척됨으로써 국경지대인 의주의 군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황해도・경기도 등지에 비축되어 있던 군자곡을 운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계지방의 군수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세종대에는 각 도의 의창곡을 양계에 운송하여 국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34)

이러한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는 대개 각 도의 환자곡 미환수분이나 의 창곡 등이 군자곡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조 이래 군량미 확보로서 취해진 위의 미곡 回換의 방법은 세종 연간에 와서는 당시 환자곡으로 연명해 가고 있던 양계민들에게 생존 자체뿐만 아니라 양계 군량미 확보의 근거를 흔든다는 이유에서 금지되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양계지역에로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방법 역시 세종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곡 회환의 방법은 쉽게 버려지지 않고 사용되었다.

미곡 회환의 방법이란 한마디로 당해 지역의 군량미가 부족할 경우에, 첫째 그 지역민 중 富實者로 하여금 군량미를 그 지역의 관에 납부하고 대신 관으로부터 미곡이나 면포를 지급받는 경우와, 둘째 경중 상인이나 그 밖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양계지역에 미곡을 납부토록 하고 그 대가를 중앙정부에서 받아가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국가에 의한 조운의 폐단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곡 회환의 방법 또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곡 회환의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곡 회환을 주도한 이들이 상인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본래의 목적인 미곡을 납부하는 일 이외에 잡물들을 양계인들에 판매함으로써 양계지역의 군량 수급에 커다란 차질이 이따금 초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곡 회환의 금지령이 수시로 발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판매금지령도 내려지곤 하였다.135)

^{134) 《}世宗實錄》 권 92, 세종 23년 정월 무오.

¹³⁵⁾ 金鎔坤, 앞의 글, 288~289쪽.

양계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는 군량미 확보의 문제보다도 어느면에서는 이의 보관문제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전쟁이 없는 경우에는 군자미가 賑貸化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종 2년(1471) 8월에는 평안도의 강가를 끼고 있는 여러 읍의 군량저축으로 司贍寺 면포 10,000필을 평안도에 보내 이를 양곡과 바꿔 여러 읍의 군수 유무를 해아려서 지급하도록하였다.136) 양계지역은 원래 면포가 귀하여 군량보충으로 면포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상인들의 교역도 그들이 가지고 간 면포와 양계인의 미곡을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로는 군량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보관을 위한 창고의 부족으로 노적상 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태는 평안도지방에서 특히 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창고를 조영한다든가 아니면 군자곡을 의창곡으로 바꾸어 전용 함으로써 창고 부족을 메워 나갔다. 137)

성종대에는 양계지방에 자주 양전을 실시하여 실제적으로 2배 가량의 군 자미를 얻을 수 있었다. 꾸준한 군량미 비축의 결과로 군량미의 진대화가 이 루어져 군량미 감소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성종 이후에는 양계지방의 군자 보충방법으로 둔전 경작이 꾸준히 장려되기도 하였다.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각 도의 일반 주현에 소속된 전세 중 상납하는 군자전세가 조운을 통해 중앙으로 운송되었다. 군자곡은 양계를 제외한 6도에서 다 올라왔지만 그 중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상납하는 군자미가 대부분이었다. 경상도의 군자 상납은 조운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그보다는 전기한 바와 같이 경상도는 왜구 빈발에 따라 상납하는 군자곡의 반 또는 전부가 주창에 납입되는 것이 세조 이후의 실정이었다.

전라도・충청도의 군량곡은 각기 부근의 조창, 즉 전라도는 法聖倉・德城

^{136) 《}成宗實錄》 권 11, 성종 2년 8월 기사.

^{137) 《}成宗實錄》 권 48, 성종 5년 10월 기사·권 53, 성종 6년 3월 정묘·권 86, 성 종 8년 11월 을해.

倉, 충청도는 貢稅串倉이나 可興倉에 수납되어 조운을 통하여 상납되었다. 조창에는 漕船과 漕卒이 있어 군자미의 운송을 담당하였다. 다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조선 조운의 원칙은 세조 이후의 일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병선과 船軍을 이용하거나 병선이 부족할 경우 私船을 이용하는 형편이었다. 이 밖에 충청·전라의 군수 운송에서 일어난 문제점은 이 지역의 일반조운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조운할 때에 일어난 해상사고 특히 安行梁에서의 파선사고라던가, 선군과 조졸의 역의 무거움이라던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선군과 군졸의 피역화 움직임과 稅米 도적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조운을 통하여 군자감창에 상납된 군수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축되었다. 상납 군자미의 수량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히 수세방법의 변화, 즉 踏驗收稅 때와 貢法收稅 때의 그것이 달랐다. 보다 직접적인 것은 그 해의 풍흉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는 하나 대략 매년 군자감창에 들어오는 전세는 단종 때를 기준하여 48,000여 석 정도였다.[138] 이 수량은 풍흉을 감안하더라도 그 후에 확대 실시되는 공법으로 상당한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종 이후는 이 군자미의 축적이이루어져 성종 때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가 왜구가 빈발했던 중종ㆍ명종때는 다시 군수미 비축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시기별로 군자 감의 비축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30만 석→(문종) 10만 석→(세조) 50만 석→(성종 13) 70만석~40만 →(성종 14) 55만 석→(중종) 70만 석→(명종초) 50만 석→(명종 6) 10만여 석.

따라서 어느 시기나 통산 50만 석 정도가 군자감창의 원곡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자곡은 창고가 부족한 형편에 이르게되고 결국 군자감창 이외에 江倉・別倉 등을 조영하여 이를 비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비축된 군자곡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종자곡·진대곡·녹봉미 및 양계지역의 군수보충 등으로 전용되기도 하였다. 139)

〈車文燮〉

^{138) 《}端宗實錄》 권 4, 단종 즉위년 10월 신해.

¹³⁹⁾ 金鎔坤, 앞의 글, 304~305쪽.